

2013년 사회복지분야 감사 사례집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2013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6일간 도 본청과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총 5개반 3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3년 우리 도 복지예산이 1조 8천여억 원으로 도 예산의 약 30%정도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고 있는데도 복지 수혜자는 만족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복지예산의 누수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내 4,700여개 사회복지시설의 방대한 자료를 확인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디만, 모두 277건 14,348백만 원의 부당집행 사항을 확인하였고 회수한 복지비는 다시 어려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34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와 함께 이로 인하여 절감되는 14,549백만 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상시점검을 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이 실무행정에 임하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시설운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의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3년 11월

경상남도 감사관

목 차

C O N T E N T S

I 기초생활보장 분야

1. 위장이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13
2. 소득인정액 초과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14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급여 부당지급	15
4. 사회복지법인 ◎◎◎◎◎ 특별위로금 부당집행	16
5. 허위 가족관계 단절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17
6. 1,6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당지급	18
7. 사망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19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부당지급	20
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부당지급	21
10. 소득초과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	22
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부적정	23
12. 정신요양시설 퇴직적립금 부당집행 및 미반납	24
1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 미 참여자 등 급여 부당지급	25
14. 사회복지법인 ◎◎◎ 세입 부당처리 및 자판기 운영 부적정	26
15.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등 부당지출	27
16. 사회복지시설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28
1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미회수	29

II 취약계층지원 분야

1.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입소자 수당 횡·유용	33
2. 장애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35
3. 비지정 후원금 지출 부적정	36
4. 장애인생활시설「◎◎◎」후원금 모금 및 관리 부적정	37

5. 장애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부당지급	38
6. (사)○○○○○○○○○○○○○○○ 직원채용 부적정	39
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수익금 승인 없이 사용	40
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설계비 부당지출	41
9. 장애인거주시설 4대보험 보험료 지출 부적정	42
10. 장애인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부당사용	43
11. ㄷ ㄷ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급 부적정	44
12. (사)○○○○○ ○○○○ 업무추진 유류대 부당지급	45
13. 사회복지법인 ○○○○○○ 차량주유비 부당지급	46
14. ○○○○ 장애인복지시설 출연 기본재산 등기 미이행	47
15. 활동보조인 활동 없이 활동비 지급	48
16. 장애인복지시설 지출증빙 자료 없이 여비지급	49
17.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개인 금전 부당집행	50
18.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원장 퇴직위로금 부당지급	51
19. 장애인단체 2013년 여행이용권사업 부당집행	52
20. 사망자, 교도소입소자 등 장애수당 및 연금 부당지급	53
21. 장애인단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54
22.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장애인 상속재산 부당집행	55
23. 보조금 교부목적외 부당집행	56
24. 보조금 지원단체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미 반납	57
25. 법정기준 미달 장애인 개인거주시설 조치 소홀	58
26. 장애인 등급 재판정 소홀	59
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부적정	60
28. ○○장애인복지시설 ㄷㄷㄷㄷㄷㄷ 시간제 근로자 고용 부적정	61
29. 사회복지법인 ○○○○○○ 차입금 상환 부적정	62
3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포인트 부당사용 및 방치	63
31. ○○장애인복지시설 퇴직적립금 부당적립 및 사용	64
32.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미지급	65
33. 시설종사자 호봉 확정 오류로 급여과다 지급	66
34. ○○○○서비스 활동 없이 비용지급	67
35.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전기료) 부당집행	68
36. 사회복지시설 ○○○○ 위·수탁 조건 미이행	69

37. 사회단체보조금 개인 유류대 등 부당집행	70
38.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후원금 사용 부적정	71
39.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72
40.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미준수	73
41.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부적정	74
42. 장애인복지시설 후원물품 사용 부적정	75
43.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부당지급	76
44.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부당감면	77
45. 사회복지시설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관리 부적정	78

Ⅲ 보육·가족·여성 분야

1. 사회복지시설 강사료 등 횡령	81
2. 도시사 허가없이 장기차입 후 어린이집 운영비로 법인차입금 부당 상환 및 증축건물 기본재산 미 편입	82
3. 어린이집 필요경비 잔액을 운영비 용도로 부당사용	83
4. 어린이집 운영비 부당집행	84
5. 어린이집 교통비 수납 부적정	86
6.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예산과목과 다르게 집행	87
7. 어린이집 기타운영비로 장기 적립형 보험료 지출	88
8. 민간어린이집 책임보험(연금보험) 가입 부적정	89
9. 어린이집 책임보험(화재보험) 만기 환급금 관리 부적정	90
10. 어린이집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	92
11.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부당집행	93
12. 차량구입 적립금 등을 원장 개인 명의 보험가입	94
13. 어린이집 원아 허위등록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95
14. 민간어린이집 과징금 운영비에서 부당지급	96
15.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당처리	97
16. 행정처분(자격정지) 기간 중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급 부적정	98
17. 민간어린이집 운영비로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부당상환	99
18. 어린이집 영수증 중복사용 등 보조금 부당집행	101

19. 어린이집 운전기사 미성년자 고용 및 인건비 부당집행	102
20. 어린이집 미종사자 해외연수경비 부당집행	103
21. 어린이집 성과상여금 등 부당집행	104
22. 법인 부지구입비 부당집행	105
23. 특별활동 외부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 등 징수 미이행	106
24.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시설감가상각비 등 개인용도 사용	107
25. 민간어린이집 직책수당, 자가운전비 등 부당집행	108
26. 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인가인원보다 초과 운영	109
27.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및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110
28. 해외체류기간중 아동보육료 부당수급	111
29. 민간어린이집 원장 통장에 기타운영비 부당적립	112
30. 민간어린이집 정년경과자 인건비 부당지급	113
31. 지역아동센터 예산집행 부적정	114
32.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개인사용 전기, 수도료 등 시설비로 부담	116
3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험료 지급 부적정	117
3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부당집행	118
35. 지역아동센터 강사수당 등 부당집행	119
36. 사회복지시설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120
37. 사회복지시설 정년경과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121
3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미충족기간 인건비 부당집행	122
39. ◎◎◎◎◎◎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집행	123
40.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124
41. 민간어린이집 건축공사비 부당집행	125
42. 어린이집 기타후생경비 부당집행	126
43. 어린이집 차량 등록 부적정	127
44. 공립 어린이집 차량관리 부적정	128
45. 어린이집 예산으로 타 시설물 공공요금 부당지급	129
46. 어린이집 과징금 부당집행	130
47. 어린이집 차입금 부당차입	131
48.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133
49.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 부적정	134
5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부적정	135

51. 민간어린이집 입·퇴사자 인건비 과다지급	136
52. 민간어린이집 정년경과자 인건비 부당지급	137
53. 어린이집 시설종사 입·퇴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138
54.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부당집행	139
5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금 처리 부적정	140
56.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국민건강보험료 부당 납부	143
57.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144
58. 법인 취득재산(어린이집 놀이터) 보고누락	145
59. 어린이집 정년경과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146
60. 사회복지시설 정년 경과자 인건비 부당지급	147
6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부적정	148
62. 아동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149

IV 노인·청소년 분야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원장의 사적용도로 부당집행	153
2. 노인복지시설 기관운영비 등을 유류비 등 사적 사용	155
3. 사회복지법인 ○○○○○○ 시설잉여금 부당전출로 개인토지 구입비 등 사용	156
4. 노인복지센터 정년경과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157
5.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158
6.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적립	159
7. 법인 및 시설회계 미 분리로 인한 운영비 부당지출	160
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부당사용	161
9.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등 부당지출	162
10. 시설 운영충당금으로 대표자 개인연금 보험가입	163
11.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시설장 개인명의 적립	164
12. ○○○○○○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법인 자부담금 사용 부적정	165
13.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국외 및 국내여비 부당지급	166
14. 노인요양시설 운영충당적립금 등 사용 부적정	167
1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168
16. ○○○○○○요양원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 등 사용 부당	169

17. ○○○○○○○요양원 환경개선준비적립금 장기 사장(死藏).....	170
18. ○○○○○○○○ 노인요양원 기본재산 미편입.....	171
19. 노인복지시설 1년미만 근로 퇴직자 퇴직금 미반납	172
20.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당지출.....	173
21.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를 운영비로 무단전용.....	174
22. 노인복지시설 수당지급 부적정.....	175
23. 사망자 및 거주불명 자에게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	176
24. 사회복지법인 ○○○요양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177
25.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	178
26. 2013년 녹색자금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179
27. 사회복지법인 ○○○○○○ 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	180
28. 노인요양원 등 위·수탁 협약조건 미이행.....	181
29. ○○○○○요양원 법인전출금 사용 부적정.....	182
30.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분할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183
31.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184
32. 노인복지시설 ○○○○○○ 종사자 인건비 과다지급.....	185
33.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 보조금 집행 부적정.....	186
34. ○○○○○○ 기능보강사업 전기공사비 과다지급	187
35. 사회복지시설 밀반찬 제공 서비스사업 집행 부적정.....	188
36. ○○○○○○○요양원 시설운영비 부당사용.....	189
37.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차입 부적정.....	190
38. ○○요양원 장비보강사업 정산검사 소홀.....	191
39. ○○요양원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 부적정.....	192

V 노동·보훈·주택 분야

1. 사회적기업 (주)○○○○○ 보조금 부당사용.....	195
2. ○○○○사업 승인 없이 보조금 단체 부당지급.....	196
3. ○○단체 종사자 퇴직적립금 과다 적립.....	197
4. 한옥지원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	198

++
++
++
++
++
++

GYEONG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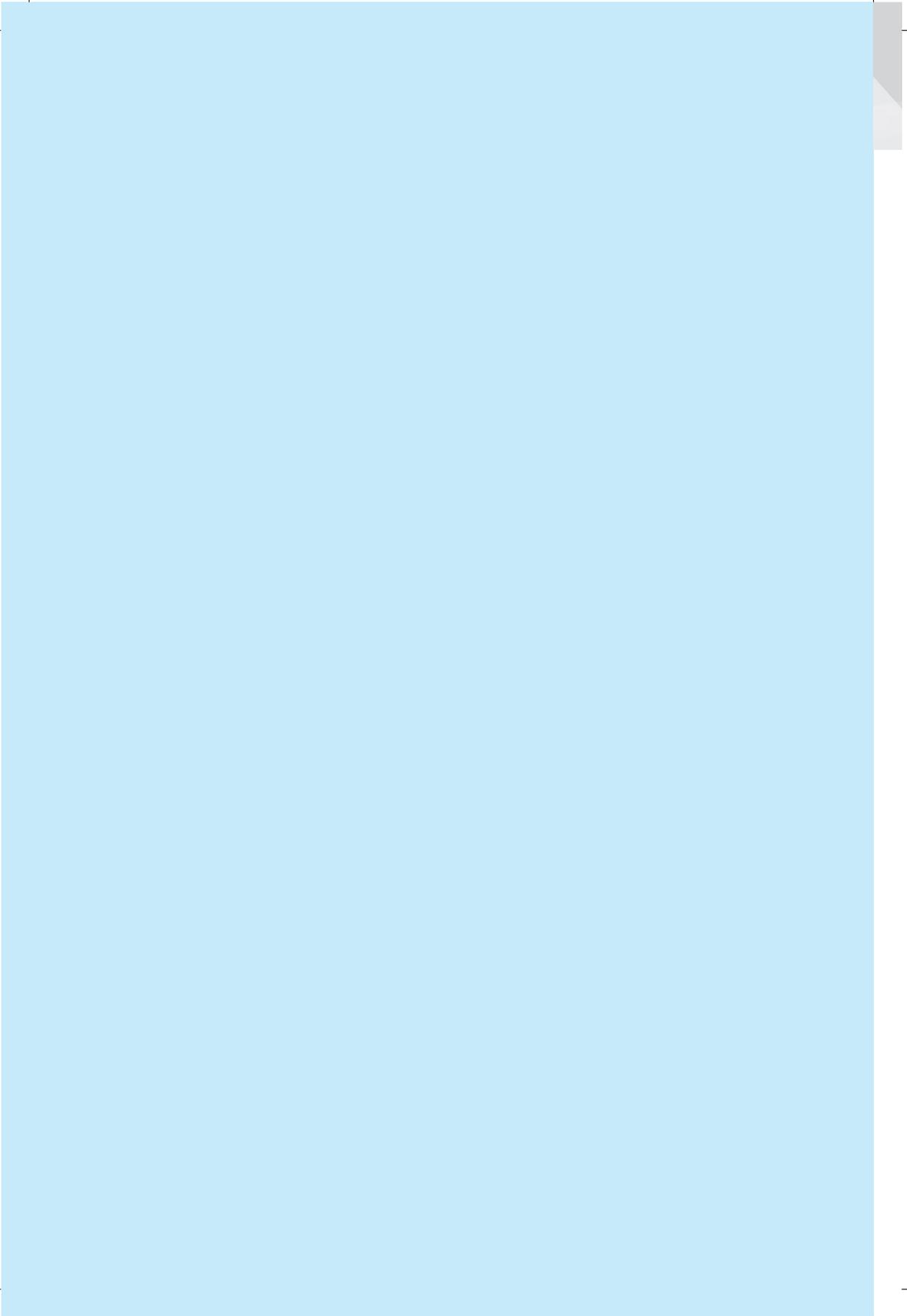
I

기초생활보장 분야

2013년

사회복지분야 감사 사례집





I 기초생활보장 분야

1. 위장이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및 제46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되어있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 ㄱㄱ군 ㄴㄴ면 ㉠㉠은 2007. 1. 19.이전까지 본인 소유 토지 ㄴㄴ군 田田면 ㉡㉡리 00번지 등 4필지를 배우자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7. 2. 22. 협의이혼 한 후 기초수급자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1년 4월과 2013년 5월 2회에 걸쳐 전배우자 △△△과 해외여행 및 △△△이 ㉠㉠의 소유 차량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가족 간 소통이 되는데도 2007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계급여 23,133천 원, 주거급여 3,519천 원, 의료급여 13,316천 원 등 총 40,006천 원 부당수급

❖ 조치내용

- ㉠㉠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40,006천 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의거 회수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 ㉠㉠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 고발



2. 소득인정액 초과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46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중지 또는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자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ㄱ ㄱ군 ㄴ ㄴ읍 ㄷ ㄷㄷ(ㄹ ㄹ ㄹ ㄹ ㄹ 회장)은 1999년 2월 개인사업장(田田田田)을 등록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득인정액(2010년 기준 790,465원)이 최저생계비(572,168원)를 초과하여 수급자 중지 대상임에도 2010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계급여 11,306천 원, 주거급여 2,770천 원, 의료급여 19,110천 원 등 총 33,186천 원 부당수급

❖ 조치내용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 ㄷ ㄷ ㄷ에게 잘못 지급된 생계급여 등 33,186천 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의거 회수하고, 같은 법 제49조 해당자인 부정수급자 ㄷ ㄷ ㄷ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 고발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급여 부당지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30조, 제3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ㄱ ㄱ시 ㄴ ㄴ면 ㄷ ㄷ은 배우자 ㄹ ㄹ과 2003. 12. 8. 협의이혼 후 본인소유 사업장 “田田田田”(26.4㎡)를 ㄷ ㄷ이 운영하는 등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ㄷ ㄷ을 제외하고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계급여 12,517천 원, 주거 및 의료급여 5,041천 원, 총 17,558천 원 부당수급
- ㄱ ㄱ시 ㄴ ㄴ읍 ㄷ ㄷ은 근로능력이 없는 “ㄹ ㄹ장애” 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자로 “田田田田” ▷>용품 전문점(00.0㎡)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하여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계급여 13,392천 원, 주거급여 3,022천 원, 의료급여 4,782천 원 등 총 21,196천 원 부당수급

❖ 조치내용

- ㄷ ㄷ, ㄷ ㄷ에게 각각 잘못 지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38,754천 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의거 회수하고,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 ㄷ ㄷ, ㄷ ㄷ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 각각 고발



4. 사회복지법인 ○○○○○ 특별위로금 부당집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 위법·부당내용

- 생계급여(특별위로금 포함)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금전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그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사회복지법인 ○○○○○(노숙인시설)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보장기관에서 위탁받은 설·추석 특별위로금(27,489원/인) 41,948천 원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 체육대회 행사 및 봄 소풍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 ○○○○○(노숙인시설)에서 설, 추석 특별 위로금 중 미 집행한 5,450천 원에 대해서는 입소자 개인에게 반환 조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5. 허위 가족관계 단절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및 제46조

❖ 위법·부당내용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져야 함에도,
- ㄱㄱ시 ㄴㄴ면 ㄷㄷ의 딸 ㄹㄹ의 배우자 ㅁㅁㅁ이 수급자이자 장애인인 ㄷㄷ(청각 4급)을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로 등재한(2013. 3. 29) 후 장애인용 차량(00소 0000, 쏘나타 0000cc)을 공동명으로 등록하였고 또한, ㄷㄷ의 사위 ㅁㅁㅁ이 2013년도 자동차보험료(330천 원)를 납부하는 등 사실상 ㄷㄷ과 딸 ㄹㄹ는 가족관계 단절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딸과의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한 ㄷㄷ(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13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생계급여 1,949천 원, 주거급여 467천 원, 의료급여 767천 원 등 총 3,183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허위 가족관계단절자 ㄷㄷ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3,183천 원 회수



6. 1,6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당지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46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이를 중지 또는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의 경우 기본생활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0cc, 비장애인인 경우 1600cc이상 승용차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야 함에도,
- □□군 □□면 ○○○ 등 7명은 2012. 6.19.부터 무쏘(경남00다0000호, 배기량 0000cc) 등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기초수급자 선정기준)를 초과함에도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계급여 50,368천 원, 주거급여 9,041천 원, 의료급여 24,968천 원 등 총 80,510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생계급여 등 84,377천 원 회수

7. 사망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 관련법규

- 「기초노령연금법」 제11조 및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을 상실하고, 거주불명등록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이된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 ㄱㄱ군 ㄴㄴ면 ㉹㉹ 등 사망자 8명에게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기초노령연금 739천 원을 지급하였고, 2010. 4.20.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 ㄱㄱ군 田田읍 ㄴㄴ로 00에서 말소)에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에게 2010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963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부당지급

❖ 조치내용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등 8명)가 사망하였는데도 계속 지급한 739천 원 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거주불명 등록자임에도 지급한 2,963천 원 회수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부당지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2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 불이행자에게는 추정소득을 부과하여야 하고, 군입대자는 수급자 혜택을 중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3개월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 임차자는 주거급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군 ㉸㉸읍 〇〇〇〇(외국인)은 2013. 3. 1.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생계급여 2,332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읍 ㉸㉸㉸는 3인 가구원으로서 군입대자가 있는데도 수급자를 조정하지 않고 생계급여 234천 원을, ㉸㉸면 ㉸㉸㉸ 등 2명은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하였음에도 주거급여 238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총 2,805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 ㉸㉸시 ㉸㉸동 〇〇〇 등 13명에 대하여 2012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소득·재산 신규 발생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실제 지급한 급여와의 차액 28,940천 원(생계 22,909천 원, 주거 5,431천 원, 장애수당 600천 원)을 과다지급

❖ 조치내용

- 부당 또는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 31,745천 원은 회수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재산 미신고로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 받는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감독 철저 촉구

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부당지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3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수급자의 소득·재산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군 등 4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 등 42명은 아들의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군 입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주거급여비 70,728천 원 부당하게 지급받음

❖ 조치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70,728천 원 회수하고, 부당 수급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촉구



10. 소득초과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30조, 제46조

❖ 위법·부당내용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군 □□면 ○○○가 미용실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이 월 500천 원으로 현금 급여기준(2012년 : 468,453원)을 초과한 자임에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계급여 등 6,343천 원을 부당지급
- □□군 □□면 △△△는 2012년도에 부양의무자(딸, ☆☆☆)로부터 1,000천 원, 조카(◇◇◇) 등으로부터 950천 원 등 정기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계좌로 송금 받아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956천 원 과다 지급

❖ 조치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현저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된 생계급여 등 7,299천 원 회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확인조사 시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의 촉구

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2005년 1월 1일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군 ◎◎◎◎◎(대표이사 겸 원장 ○○○)에서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임에도 2010. 4. 1. 조리원으로 △△△(원장의 며느리)을 신규 채용하면서 해당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시군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채용공고도 없이 채용함

❖ 조치내용

- 공개모집 절차 이행없이 종사자를 채용한 ◎◎◎◎◎(대표이사 겸 원장 ○○○)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주의 촉구



12. 정신요양시설 퇴직적립금 부당집행 및 미반납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 위법·부당내용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 사회복지법인 ○○○○○○ 대표자 겸 원장 ○○○는 사용자이므로 퇴직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닌데도 1988.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보조금으로 17,493천 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였고, ○○○○○○센터(센터장 △△△)에서는 □□□ 등 2명이 1년 미만 근무 퇴직자인데도 퇴직금 1,573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의 대표자 퇴직적립금 및 진해지역자활센터 1년 미만근무자의 퇴직금 중 2012년도 이전분 16,169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도 분 2,897천 원은 시설 회계로 반납하고, ○○○○○○센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 미 참여자 등 급여 부당지급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및 제11조, 「의료급여법」 제16조 및 제17조

❖ 위법·부당내용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의료급여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에서는 □□동 ○○○이 2013. 2. 5.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후 자활사업에도 참여하지 아니하는데도 추정 소득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주거급여 617천 원, 생계급여 2,575천 원을 지급하는 등 □□시 관내 ○○○ 등 17명에게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비 14,963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등 17명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 14,963천 원 회수



14. 사회복지법인 ○○○ 세입 부당처리 및 자판기 운영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 위법·부당내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복지사업(매점 및 자판기운영)을 2008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운영하면서 매점·자판기 수익금 22,638천 원은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아닌데도 법인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여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또한, 매점 운영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자판기 설치 신고 없이 운영하였음.

❖ 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 ■■■■에서 자판기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입소자 후생 복리를 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내 설치된 매점 및 자판기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 등록 및 「환경위생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신고토록 조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표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5.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등 부당지출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田田田田田(시설장 ○○○, 직원 8명)에서는 2011년부터 (사)ⓉⓈⓈⓈⓈ 소속 3명의 직원이 시설 일부를 점용하여 상주 근무하면서 시설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2011년 1월부터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임대료 1,829천 원, 전기·수도사용료 1,532천 원 등 총 3,361천 원의 보조금을 부당지출

❖ 조치내용

- 田田田田田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법인 사용 임대료로 부당하게 집행한 3,361천 원은 회수 조치하고, 田田田田田(시설장 ○○○)와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6. 사회복지시설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 관련법규

- 「☐☐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 직제 및 보수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군 사회복지시설(시설장 : ○○○)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시간 공제 없이 시설장 등 6명의 시간외근무 수당 5,730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5,730천 원 중 2012년도에 지급한 3,047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도에 지급한 2,683천 원은 시설회계에 반납 조치와, ☐☐군 사회복지시설(시설장 :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미회수

❖ 관련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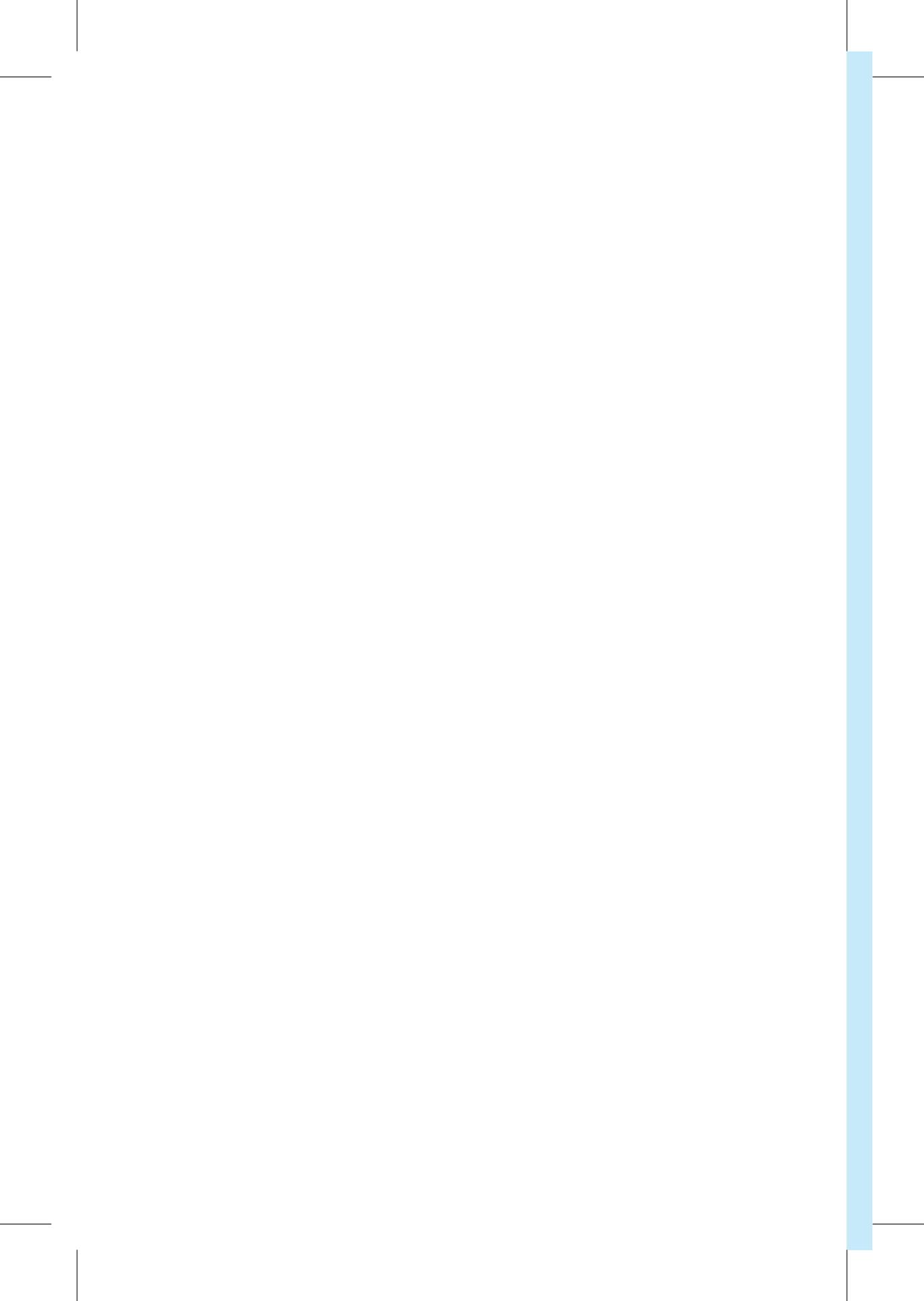
- 「☐☐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9조

❖ 위법·부당내용

-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용자 받은 자는 상환기간 내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사항 통지 및 납부 촉구 등 변제를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수급자인 ☐☐군 ☐☐면 ○○○ 등 51명이 축산자금, 가계운영자금, 주택자금 등의 용도로 ☐☐군사회복지통합기금에서 용자한 286,647천 원의 상환기한이 2010년말 만료되었는데도 징수 독촉 등 미조치

❖ 조치내용

- 용자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용자금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위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용자금 지원방법 개선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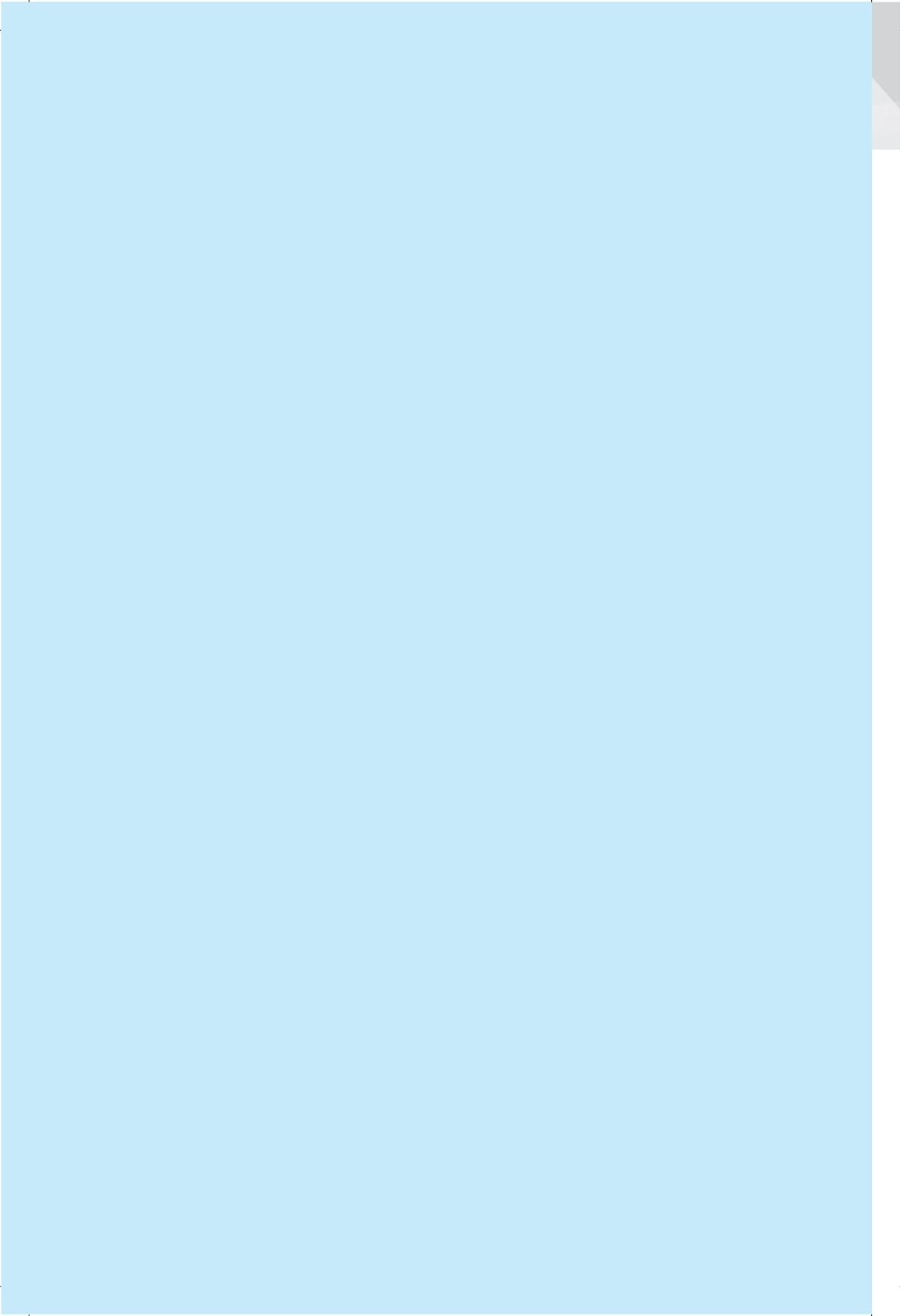
GYEONGNAM

II

취약계층지원 분야

2013년
사회복지분야 감사 사례집





II < 취약계층지원 분야

1.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입소자 수당 횡·유용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4호, 제49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3조, 제5조

❖ 위법·부당내용

-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대리인이 금전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지출할 때에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고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대표이사 겸 원장 ○○○)에서는 입소자의 개인통장 (장애수당 통장)에서 227,697천 원을 ○○○○○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이중 24,202천 원은 종사직원의 해외연수, 175,158천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간이영수증 또는 영수증 처리도 없이 부당지출하였으며, 20,000천 원은 2011. 2.22. 직원(과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실사용자 ○○○ 원장) 16개월간 사용하다가 2012. 6.18. 요양원 통장으로 입금함.
- ○○○○○○○○○ (시설장 □□□) 업무부장 ☆☆☆은 아무런 위임이나 동의 없이 2012년 1월부터 2013. 8.20.까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등 금전 346,320천 원을 인출하여 증빙서류 등 근거 없이 집행하였음.



- 또한, [시설장 ◇◇◇] 사무국장 [■■■]은 아무런 위임이나 동의 없이 2012년 1월부터 2013. 6.30.까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등 금전 23,503천 원을 인출하여 이 중 79건 2,886천 원은 간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입소 장애인의 수당(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원장 개인용도 일시적 사용(유용) 및 직원 해외연수경비로 사용(횡령)한 [원장 ○○○]와 담당과장 [△△△]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
 - [원장 ○○○]에서 통장의 잔금과 직원의 해외연수비 사용분 및 현금으로 인출한 52,539천 원을 입소자에게 반환하고 현금으로 부당집행한 175,158천 원(수사결과에 따라)은 해당 장애인에게 반환 조치
 - [원장 ○○○]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 [시설장 □□□] 업무부장 [☆☆☆]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4호 해당자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
 - [시설장 □□□] 이용장애인 소유 금전 부당집행 346,320천 원(수사결과에 따라 조정)은 해당 장애인들에게 반환 조치
 - [시설장 □□□]과 [시설장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2. 장애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나,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 ㉡시, ㉢시, ㉣군의 장애인시설 11개소에서는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하여 퇴직급여 48,459천 원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적립하였음에도 보조금 계좌 또는 시설회계로 반납하지 아니 하였음.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적립된 퇴직급여 중 2012년도까지 적립된 34,885천 원은 회수, 2013년도에 적립된 13,574천 원은 시설회계에 반납 조치하고,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를 부당하게 적립한 ㉠ ㉡시, ㉢시, ㉣군의 장애인시설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 비지정 후원금 지출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후원금의 사용에 있어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 직책보조금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사)○○○○○○○○○○연합회(회장 ○○○) 등 4개소에서는 업무추진비, 회장 및 사무처장의 직책보조금 등으로 47,384천 원 부당집행하였음.

❖ 조치내용

- (사)○○○○○○○○○○연합회(회장 ○○○) 등 4개소에서 업무추진비, 직책보조금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7,095천 원 반납 조치하고, 위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4. 장애인생활시설 「○○○」 후원금 모금 및 관리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5조

❖ 위법·부당내용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토지·건물 등의 자산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사회복지법인 ○○○(원장 ○○○)에서는 당초 후원금 모금 목적과 다르게 건물구입비로 90,000천 원 부당하게 집행.

❖ 조치내용

- 후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5. 장애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부당지급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시장·군수는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장애등급 재판정이 실시되도록하여야 하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장애인등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군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애 재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 등 9명에게 장애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36,629천 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7개 시군에서 재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9명에게 102,926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장애 재판정 미 이행자에 대한 재판정 통보, 촉구, 등록취소 등 사후관리 업무 철저 촉구

6. (사)○○○○○○○○○○○○○○○○ 직원채용 부적정

❖ 관련법규

- 경상남도 ㉠㉡㉢㉣과 2011년 도비 보조에 따른 장애인관련 지원센터 운영 지침(2011. 1.31)

❖ 위법·부당내용

-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으로 하고 면접관 중 1인은 도 관계자로 구성하도록 지침을 통보하였음에도,
- 2011년 11월 직원 1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도 관련자 1명을 면접관에서 배제하고 응시단체 회장인 ○○○과 소속 사무처장 △△△ 등 2명 만이 면접관으로 참가하여 응시자 4명중 단체 대표 ○○○의 아들인 □□□을 합격시킴으로써 면접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음.

❖ 조치내용

- 장애인단체에서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에는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수익금 승인 없이 사용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 ☐☐군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 까지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수익금 327,015천 원 중에서 16,892천 원을 운영위원회 의결 및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 조치내용

- ☐☐군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앞으로 운영수익금을 운영위원회 의결 및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설계비 부당지출

❖ 관련법규

-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 하고, 보조금교부 결정시 토목설계비와 건축설계비는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는 시설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 단가(건축면적㎡당 단가 1,266천 원)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는 건축비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 ☐☐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 ○○○)에서는 2012년 시설 신축공사비로 402,000천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집행 할 수 없는 설계비용 등으로 25,850천 원 부당지출

❖ 조치내용

- 신축공사 보조금에서 설계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25,850천 원은 법인회계로 반납조치하고, ☐☐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 ○○○)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9. 장애인거주시설 4대보험 보험료 지출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지침)

❖ 위법·부당내용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4대보험 관련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사무국장 ○○○ 등 24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부과한 고지금액보다 과다 산정하여 별도 전용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이중 건강보험료는 매년 정산에 따른 본인 추가 부담분에 대하여 증액 징구 없이 사업자 부담 분으로 총당하는 등 4대보험료 총 31,133천 원 부당지출

❖ 조치내용

- 4대보험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고지한 금액보다 과다 지출한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012~2013년도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 6,329천 원을 시설회계로 반납 조치하고, ○○○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0. 장애인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부당사용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의2

❖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 조건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입소보증금은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시설장 ○○○)은 입소장애인 △△△ 등 27명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입소보증금 172,208천 원 중, 2006. 1. 9.부터 2008. 3. 7.까지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로 20,263천 원을 사용하고, 2007. 6.12.부터 2008. 1.14.까지 증축공사 설계, 부지조성, 조경·석축공사 등 시설기능보강비로 26,500천 원을 사용하는 등 총 46,762천 원의 입소보증금을 부당사용

❖ 조치내용

-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시설장 ○○○)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운영비 46,762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 조치하고, 위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1. ▣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급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 ▣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 ▣시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 시설 종사자에게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151,049천 원을 직책수당, 법인수당, 가정의달 수당, 창립기념일 수당 등으로 부당지급

❖ 조치내용

- ▣ ▣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 등 5개 시설에서는 수당 지급 시 수당지급 기준(수당종류,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마련토록 촉구
- ▣ ▣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 등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2. 사)○○○○ ○○○○ 업무추진 유류대 부당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위법·부당내용

- 법인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 ○○○○장애인부모회 정관 및 법인의 급여규정 등에서 업무추진 유류대를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출장 시에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 일비 등을 지급하는 출장여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도,
- (사)○○○○ ○○○○장애인부모회에서는 회장 ○○○의 공무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출장대장에 등재)도 없는 상황에서, 2009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장 ○○○에게 업무추진 유류대 명목으로 임의로 업무추진비 368회 19,175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 조치내용

- (사)○○○○ ○○○○장애인부모회에서 회장 ○○○의 업무추진 유류대로 부당하게 지급된 19,175천 원 반납



13. 사회복지법인 ○○○○○○ 차량주유비 부당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정관」 제33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 사무국에는 필요한 대표이사, 상임이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직원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대표 ○○○)에서는 법인 내 복지시설인 〰〰〰〰〰〰 원장 △△△(○○○의 자) 등 2명을 법인사무국 비상근 직원으로 두고 법인 직원에 대하여는 차량주유비 지급 등 수당지급 규정이 없는데도 △△△ 등 2명에게 차량주유비 명목으로 법인 운영비와 후원금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53회 8,423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법인 내 복지시설인 〰〰〰〰〰〰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차량주유비 8,423천 원은 법인회계로 반납조치하고, 시·군에서는 ○○복지재단(대표 ○○○)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14. ○○○○ 장애인복지시설 출연 기본재산 등기 미이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위법·부당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 ○○ 사회복지법인 ○○○(대표 ○○○)에서는 2007. 4.24. 설립 당시 ○○군 ○○면 ○○리 0000번지(전) 1,012㎡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으나, 지목이 전이라 법인으로 명의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으로의 등기를 미루어오다 같은 지번에 2012. 5.25.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68,976천 원)으로 저온창고를 신축하면서 2012. 5.30.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는데도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건물)과 출연한 재산(토지 1,012㎡)에 대하여 2013. 8.26. 현재까지 법인재산으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 조치내용

- ○○ 사회복지법인 ○○○(대표 ○○○)의 출연재산과 보조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등기 등 절차가 이행되도록 시정 요구



15. 활동보조인 활동 없이 활동비 지급

❖ 관련법규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상결제 유형으로 중복결제·심야결제·연속결제 및 서비스 제공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 건으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경우로서, 결제 시 입력한 날짜·시간과 제공기록지상 날짜·시간이 불일치 할 경우 소급결제 원칙에 어긋나며, 심야결제는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내역 확인결과 활동보조인 ○○○ 등 8명이 중복결제 1회, 연속결제 6회, 심야(익일)결제 12회 총 19회의 이상결제 내역이 있고, 이중 결제 시 입력한 날짜·시간과 제공기록지상 날짜 시간이 불일치 하였으며, 심야결제 특이 사항란에 사유기록이 누락 되어 있어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활동 지원급여비용 총 451천 원 과다 지급.

❖ 조치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이상결제 내역으로 청구된 활동지원급여비용 451천 원 회수하고, □□군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바우처 이상 결제내역에 대한 현장을 확인 등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6. 장애인복지시설 지출증빙 자료 없이 예비 지급

❖ 관련법규

-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정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확인하여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사용여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집행 절차의 준수여부, 관련 증빙서류의 첨부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보조금으로 시설장 ○○○ 등 18명의 104회 2012. 1. 1.부터 2013. 8.26.까지 관외 출장을 하였으나 지출증빙 자료 없이 예비 8,278 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지출증빙 없이 여비를 지급한 ◎◎장애인복지관(시설장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7.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개인 금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ㄷ ㄷ시 ㉹㉹㉹㉹ ㉹㉹(시설장)은 시설이용 장애인의 금전관리를 하면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용돈 등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통장에서 인출 집행함이 적정함에도, 2011. 3. 4.부터 2013. 9.23.까지 장애인 △△△ 등 5명의 통장에서 시설이용비 외 부정기적으로 월 150~220천 원을 추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모두 16,410천 원을 자부담 시설운영비 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하면서, 시설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11,628천 원을 개인통장에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

❖ 조치내용

- 장애인의 개인 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관리한 11,628천 원은 장애인 개인 통장에 반환 조치하고, 장애인 개인 금전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가 있는 ㉹㉹㉹㉹ 대표자 ㉹㉹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 ㉹㉹㉹㉹(대표자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8.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원장 퇴직위로금 부당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 위법·부당내용

-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말하며, 법인의 예산은 이를 편성하여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군 사회복지법인 ○○○○마을(당시 대표이사 ○○○)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탁금 70,000천 원을 해지하여 법인 제3대 대표이사를 지낸 ○○○○△△△ 원장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0,000천 원 부당지출

❖ 조치내용

- ○○○○ 원장 △△△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30,000천 원은 사회복지법인 ○○○○마을 법인회계로 반납하고, 사회복지법인 ○○○○마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



19. 장애인단체 2013년 여행이용권사업 부당집행

❖ 관련법규

- 「☐☐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2013년 여행이용권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7.12.부터 2013. 7.16. 사이 2차례에 걸쳐 총 2,700천 원에 해당하는 여행이용권카드를 발급받아 (주)○○관광에 카드결제 한 후 여행은 가지 않고 여행경비 2,400천 원은 (카드수수료 300천 원 제외)을 돌려받은 후 계약금 명목으로 700천 원은 다시 현금으로 (주)○○관광에 돌려주고 1,700천 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협회 운영비 계좌에 보관한 사실이 있는 등 총 2,700천 원 부당하게 집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집행하고 돌려받은 보조금 2,700천 원 회수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단체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0. 사망자, 교도소입소자 등 장애수당 및 연금 부당지급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1조

❖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연금(수당)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정신·심장 장애인은 2년 장루·요루·간질 장애인은 3년 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함에도,
- □□군에서는 2011.12.30.부터 2013. 3. 5. 사이 □□군 □□면 □□길 00번지 ○○○ 등 6명은 장애인연금(수당) 145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등 3명은 사망, □□□은 2012. 9. 27. 교도소에 입소하였는데도 사망 및 교도소 입소 다음 달에 장애인연금(수당)을 20천 원에서 170천 원 까지 395천 원의 장애인연금(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 또한, ☆☆☆ 등 3명은 2012.10.15.부터 2013. 8. 1. 사이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지났음에도 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조치를 아니하고 장애수당 750천 원과 장애인연금 116천 원 등 총 866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수당 및 연금 395천 원 회수하고, 장애수당 및 연금 등이 과다 또는 부당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관리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1. 장애인단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간외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 ☐ ☐군 (사)○○○○○○○○협회 ☐ ☐군지회 (지회장 ○○○)에서는 2012년, 2013년 ☐ ☐군 장애인재활센터 및 ☐ ☐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종사자 △△△ 등 5명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9,156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9,156천 원 중 2012년 4,895천 원은 회수, 2013년 4,261천 원은 반납하고,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단체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2.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장애인 상속재산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민법」 제1057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및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1년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장애인거주시설) 원장 ㉸㉸㉸은 ㉸㉸㉸에 거주하다 사망한 故 △△△(2012. 6. 6.)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연금, 수당 등 개인재산 3,294천 원을 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2012. 6.10. 접수입으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사용
- ㉸ ㉸군 ㉸㉸㉸㉸㉸(장애인거주시설) 원장 ☆☆☆은 ㉸㉸㉸㉸㉸에 거주하다 사망한 故 ◇◇◇(2011.12.30.) 故 ■■■(2013. 3. 9.), 故 ▲▲▲(2013. 6.25.) 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연금, 수당 등 개인재산 6,620천 원을 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의 후원금(5,120천 원) 및 미사 봉헌금(1,500천 원) 명목으로 6,620천 원 부당하게 사용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집행한 상속재산 9,894천은 회수하고, 위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23. 보조금 교부목적외 무단집행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사)○○○○○○○○연합회, ○○장애인 ○○센터 등 4개 단체에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 계획에 없는 직책보조금 지급, 과년도 화환대금 지급, 레프팅대회 자격없는 업체와 계약 등 보조금 50,631천 원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 조치내용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고, 사업내용 변경시에는 사전에 변경절차를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 촉구

24. 보조금 지원단체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미 반납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9조

❖ 위법·부당내용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 ㉸군 ㉸㉸㉸㉸시설(원장 ㉸㉸) 등 4개소의 시설에서 1년 미만 종사자 60명에 대하여 퇴직적립금 28,805천 원을 적립하였음에도 보조금 계좌 또는 시설회계로 반납하지 아니 하였음.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된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중 2012년 이전분 23,956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에 적립된 4,849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 조치하고, ㉸ ㉸군 ㉸㉸㉸㉸시설(원장 ㉸㉸)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25. 법정기준 미달 장애인 개인거주시설 조치 소홀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위법·부당내용

-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에 대하여 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 이상, 생활지도원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종류에 따라 장애인 3~10명 당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대표자 ○○○)은 2006. 1. 1. 신고운영중인 장애인 개인거주시설로서 법정기준 대비 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 생활지도원 1명이 부족하여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조치 소홀

❖ 조치내용

- 법정기준 대비 종사자가 부족한 ○○○○○○○(대표자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군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종사자가 법정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촉구

26. 장애인 등급 재판정 소홀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 제7조

❖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시장·군수는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하여야 하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장애인등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군에서는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 운전면허 취득현황 검토결과 시각장애인 제2급 ○○○, 뇌병변장애인 제1급 △△△, 척추장애인 제2급 □□□은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추측)함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장애등급 재판정 절차 없이 2011년 1월부터 2013. 8.26.까지 장애인연금 8,599천 원 및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함

❖ 조치내용

-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장애등급 재판정업무 철저 촉구



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 위법·부당내용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 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 ◎◎노인요양원(시설장 ○○○) 등 ㉠㉠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3개소의 시설장들이 종사자를 채용 하면서 시설장의 자녀들을 비공개로 채용하였고, ㉠㉠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은 2013년 6월 법인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을 법인 산하시설의 원장으로 비공개로 채용하였음.

❖ 조치내용

-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시 공개모집을 위반한 위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채용을 비공개로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8. ◎◎장애인복지시설 ㉡㉡ 시간제 근로자 고용 부적정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장애인복지시설안내

❖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추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운영법인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 ○○○)에서는 2012. 1.11.부터 2012. 12. 28.까지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운영 법인의 심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없이 △△△ 등 8명의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 7,615천 원 부담집행

❖ 조치내용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시에는 운영법인의 심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추가 인력을 채용하도록 시설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9. 사회복지법인 ○○○○○○ 차입금 상환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담보제공 등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로부터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자율 6% 정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복지재단(대표 ○○○)에서는 2009년 보호작업장 설치비용 25백만원을 법인 대표로부터 차입하면서 제1금융권의 일반 담보대출 이자율보다 2배 정도 비싼 12%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3개월 동안 총 8,250천 원(월 250천 원)을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담보대출 이자율(6% 정도) 대비 4,125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 조치내용

- 앞으로 법인회계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재단(대표 ○○○)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3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포인트 부당사용 및 방치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야하며, 법인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관리안 내에서는 시설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적립포인트는 다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 □시 ◎◎◎◎(장애인시설) 등 272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조금 집행으로 적립된 포인트 중 18,426,921포인트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주유비, 기프트카드 구입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 □ □시 □□□□□(원장 ○○○)에서는 대표자가 시설에 거주하면서 대표자 개인 사용료를 분리하지 않고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료 2,458천 원을 시설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 □ □군 □□□□□(센터장 △△△) 등 21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012. 1. 1.부터 2013. 7.31.까지 적립된 포인트 4,042,794점(원)을 해당시설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드사에 그대로 두어 적립포인트 미 사용.

❖ 조치내용

- 보조금 집행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해당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주의 조치



31. ◎◎장애인복지시설 퇴직적립금 부당적립 및 사용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센터 ㉠㉠㉠㉠(대표 ○○○)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면서 △△△ 등 4인에 대하여 ◎◎◎◎◎센터에 근소한 퇴직금 3,524천 원 보다 6,326천 원 많은 9,850천 원으로 과다 지급하였고,
- 대표자(○○○)은 퇴직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닌데도 3,577천 원을 적립하고 적립액보다 많은 퇴직금 5,708천 원을 부당하게 청구·지급하였으며,
- 또한, 종사자 □□□, ☆☆☆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면서 4,330천 원에 대하여 1~2개월 지연 적립하였고, 퇴직적립금 2,134천 원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센터 ㉠㉠㉠㉠(대표 ○○○)에서는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포장박스 제작 등의 사유로 6,462천 원 인출한 후 77일 뒤 재입금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201일간 22,769천 원 부당 사용하였음.
- ◆◆◆◆◆ 대표자 겸 원장 ◇◇◇은 2007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퇴직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닌데도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 18,083천 원 적립.

❖ 조치내용

- 초과 및 부당집행된 퇴직금 15,355천 원은 회수, 8,237천 원은 반납 조치하고, 위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2.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미지급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법·부당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다 퇴직한 ○○○에 대하여는 2013. 5.10.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3. 8.26. 현재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직적립금 3,851천 원 미지급

❖ 조치내용

-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고, 위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3. 시설종사자 호봉 획정 오류로 급여과다 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유사경력으로 의료기관 근무경력 및 특수학교 근무 경력은 80%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사무국장(○○○)의 유사경력은 80% 인정이 적정함에도 100% 인정하여 2012. 6.29.부터 2013. 8.26.까지 급여 749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종합복지관 팀장(△△△)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2개소의 경력 합계 오류로 2012. 1. 1.부터 2013. 8.26.까지 838천 원 과다 지급하는 등 호봉획정을 잘못하여 모두 1,587천 원 과다지급

❖ 조치내용

- 호봉오류로 과다 지급된 ○○○○○종합복지관 팀장 △△△의 보수 838천 원 중 2012년도분 578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도분 260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조치하고, ○○○○○ 사무국장 ○○○ 보수 749천 원 중 2012년도분 329천 원 회수하고 2013년도분 420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앞으로 호봉 획정 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호봉획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

34. ○○○○서비스 활동 없이 비용지급

❖ 관련법규

-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발달재활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결제방법의 기본 원칙으로 제공기관은 각 회당 서비스 제공 후 결제 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선결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 □□군에서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하여 2012. 1월부터 2013. 9월까지 각 회당 서비스 제공 후 결제하지 않고 연속하여 2~8회 이상 결제 한 결제내역이 359회이며, 이중 303회는 서비스제공 기록지 불일치 및 기록지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비용을 지급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이 6,623천 원 부적정하게 지급

❖ 조치내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등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35.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전기료) 부당집행

❖ 관련법규

- 「☐☐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조금 반환을 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군 소재 ○○○○○○○○○협회 ☐☐군지회 (지회장 ○○○)에서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센터 및 ▨▨▨▨▨▨▨▨▨▨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료 명목으로 매월 100천 원 총 4,300천 원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군장애인복지회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송금하였으나, ☐☐군장애인복지회에서는 그 중 1,302천 원만 전기료로 지급하고 잔액 2,998천 원은 복지회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2,998천 원 회수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단체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37. 사회단체보조금 개인 유류대 등 부당집행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위법·부당내용

-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내역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군 소재 (사)○○○○○○○○협회 ☐☐군지회 (지회장 ○○○)에서는 단체 운영비에서 지회장 개인의 차량 유류대, 식비 등으로 11,908천 원 부당지출

❖ 조치내용

- (사)○○○○○○○○협회 ☐☐군지회에서 지회장 개인의 차량 유류대, 식비 등 사 적용도로 사용한 총 207건 11,908천 원은 단체운영비로 반납하고, ☐☐군에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단체 등의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38.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후원금 사용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에서는 2012. 6. 1.부터 2013. 7. 31.까지 법인대표 ○○○에게 ○○○ 운영규정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음에도 별도의 일비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5,654천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시설의 경영자문비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5,360천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014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후원금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지급된 11,014천 원은 법인 회계로 반납하고, ㉸ ㉸○○○(대표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39.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 관련법규

- 「☞☞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4조

❖ 위법·부당내용

- 복지관은 시장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고,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본래 목적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과 어긋나는데도 2002. 1. 15.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2012. 1. 1.부터 현재까지는 ☞☞☞☞☞☞☞☞☞개발공사에 각각 부당하게 위탁·운영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연봉이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다 2011년에는 128,955천 원(15명), 2012년에는 116,402천 원(13명)을 많게 지급하는 등 2년간 총 245,357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초래

❖ 조치내용

-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40.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미준수

❖ 관련법규

- 「○○○○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 위법·부당내용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사)○○○○○○○○○○장애인복지협회(회장 ○○○) 및 △△시 ◆◆재활원(원장 △△△)에서 총 사업비가 축소되었는데도 사업비를 보조비율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자부담 비율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보조금 33,146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33,146천 원 회수하고,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부담 비율대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정산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41.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2, 제41조의7

❖ 위법·부당내용

-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 구분에서는 후원금은 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사용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 ◎◎시립복지원(원장 ○○○)에서는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32,348천 원을 부당하게 관리하였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년도 이월된 비지정 후원금은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시설의 신규 사업을 위한 적립금 명목으로 51,337천 원을 부당하게 예치하였음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적립된 후원금 51,337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시립복지원(원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42. 장애인복지시설 후원물품 사용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위법·부당내용

-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 ○○○(대표자 ○○○)에서는 2012. 1. 19.과 2013. 1. 4., 2013. 2. 6. 총 3회에 걸쳐 ○○시로부터 ○○○○○○○○○○상품권 2,745천 원을 시설거주인 1인당 15천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후원받았으나 지정후원금 사용목적이 아닌 시설후원자 및 우수직원 시상금 명목으로 1,150천 원을 부당하게 사용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집행한 후원금 1,150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대표자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4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부당지급

❖ 관련법규

- 「장애인연금법」 제13조

❖ 위법·부당내용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에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권자인 ○○○을 장애아동에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전환하지 않아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장애인연금 및 수당 1,030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은 장애등급 변경에 따라 연금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장애인연금 340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장애등급 변경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370천 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회수하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44.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부당감면

❖ 관련법규

-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

❖ 위법·부당내용

- 사우나실 시설사용료는 일반인 1회 3천 원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직원 △△△ 등 20여명이 사용한 총 373회, 1,119천 원의 사우나실 사용료를 부당 감면하였음.

❖ 조치내용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우나 사용료를 부당 감면한 1,119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시설 직원에게 사우나실 사용료를 부당하게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45. 사회복지시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관리 부적정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대리인이 금전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지출할 때에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립복지원에서는 ○○○ 등 52명의 입소 장애인으로 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을 회계담당자 △△△가 입소 장애인을 대신하여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2. 1. 1.부터 2013. 9.10.까지 장애인 소유 금전 총 151,339천 원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음.

❖ 조치내용

- ◎◎시립복지원(원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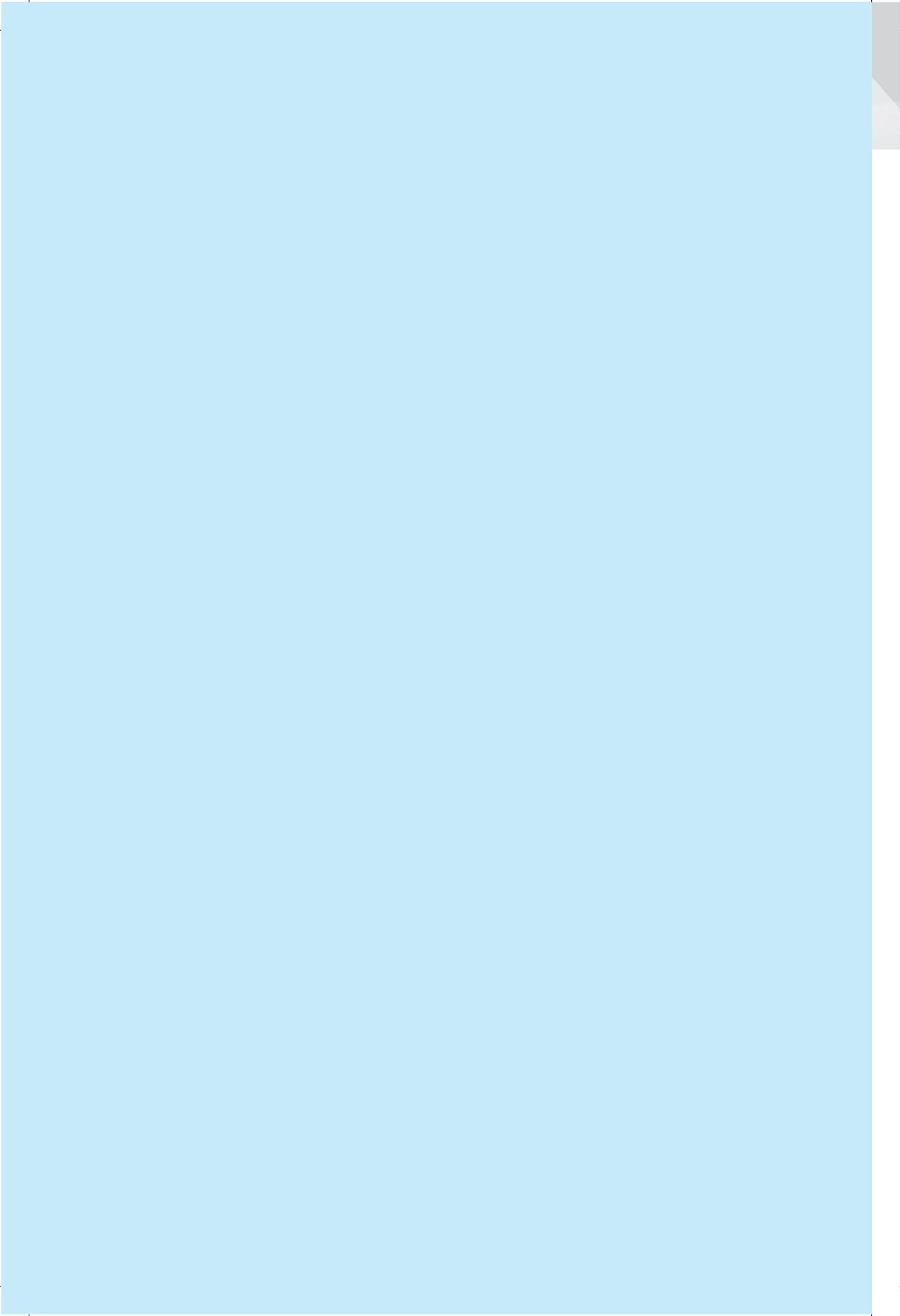
GYEONGNAM

Ⅲ

보육·가족·여성 분야

2013년
사회복지분야 감사 사례집





Ⅲ 보육·가족·여성 분야

1. 사회복지시설 강사료 등 횡령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 ○○○○○○센터(소장 ○○○, 이하 센터)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과거 센터에 근무 경력이 있는 △△△ 등 6명이 해외출국 등으로 강의 사실이 없음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강사료 51,525천 원을 집행하고, 센터 종사자 ☆☆☆의 실제퇴직일 보다 3개월 늦게 퇴직 처리함으로써 종사자 급여 및 수당 5,870천 원 집행 등 총 57,395천 원을 근무당시의 급여계좌로 지급한 후 돌려받아 사적용도로 부당사용

❖ 조치내용

- ○○○○○○센터에서 강사료를 허위 지급하여 횡령한 51,525천 원, 퇴직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허위지급하고 횡령한 5,870천 원은 회수하고, 강사료를 등을 횡령한 센터소장 ○○○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 ○○○○○○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2. 도지사 허가없이 장기차입 후 어린이집 운영비로 법인차입금 부당 상환 및 증축건물 기본재산 미 편입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차입금 상환은 일시운영 차입금에 한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법인은 그 취득 사유와 가액 등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시 ○○읍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대표 ○○○)은 어린이집 증·개축에 따른 자부담금 300,000천 원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장기차입 함은 물론 법인이 차입하여 시설로 전입시켜 시설의 증·개축비로 사용한 후, 법인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2009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5,000천 원(원금: 192,000천 원, 이자: 13,000천 원)을 시설운영비(법인전출금)에서 집행하면서, 법인계좌(별도 법인계좌는 없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 법인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증·개축으로 인하여 법인 기본재산이 증가하였는데도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시키지 아니함

❖ 조치내용

- 도지사 허가없이 시설 증개축비 자부담금 300,000천 원을 개인으로부터 장기차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대표 ○○○은 같은 법 제53조 제1호 해당자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 고발
- 법인 기본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도지사 허가없이 장기차입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 어린이집 필요경비 잔액을 운영비 용도로 부당사용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보호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군 ㉸㉸㉸㉸㉸어린이집(단체, 대표자 ㉸㉸) 등 3개소 어린이집(단체 1, 법인 1, 민간 1)에서는 2012년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 받은 필요경비 20,565천 원 중 13,439천 원을 영어 등 특별활동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하여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7,126천 원을 운영비로 전환하여 부당 사용.
- ㉸ ㉸시 ㉸ ㉸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대표 ㉸㉸)은 2012년 학부모로부터 현장학습비, 통학차량비,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납받은 필요경비 64,838천 원 중 39,246천 원은 집행하고 잔액 25,592천 원은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보고 등 절차 없이 운영비로 사용

❖ 조치내용

- ㉸ ㉸군 ㉸㉸㉸㉸㉸어린이집 등 3개소에서 부당하게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한 7,126천 원은 보호자에게 반환
- ㉸ ㉸시 ㉸㉸어린이집에서 2012년 학부모로부터 수납받은 필요경비의 집행잔액 25,592천 원은 운영위원회 보고 후 학부모에게 반환
- 위 어린이집 4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 어린이집 운영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 등 5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장 개인 명의의 책임보험, 원장 남편 휴대폰 요금, 어린이집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 속도위반 범칙금 등 납부와 지출증빙서류 없이 원장 개인 계좌 송금, 간식비, 법무사 수수료, 경계측량비 등에 총 36,534천 원 부당집행.
- □ □군 ◎◎어린이집(민간, 원장 ○○○)에서는 2013. 4. 1. 지입차량(00버 0000, 스타렉스) 보험료로 861천 원, ▨▨▨▨어린이집(가정, 원장 △△△)에서는 2012. 7.23. 어린이집이 포함된 건물 재산세로 170천 원, ▩▩▩▩영아전담어린이집(법인, 원장 ☆☆☆)에서는 2012. 7. 2.부터 2013. 6.20.까지 법인차량 소유 그랜저 자동차(00서0000) 보험료 및 자동차세 1,236천 원, ▮▮▮어린이집(민간, 원장 ◇◇◇)에서는 2012. 1.20.부터 2012.10.18.까지 ◇◇◇ 원장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577천 원을 집행하는 등 총 2,844천 원의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
- □ □군 ◎◎어린이집(법인, 원장 ○○○)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명의의 공용 휴대폰 1대가 있으면서도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대표자 △△△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2012. 6.21.부터 2013. 7.22.까지 1,084천 원을 수용비에서 부당 납부.
- □ □시 ◎◎◎◎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에서는 대표자(원장)가 시설에 거주하면서 매월 발생하는 상수도 및 전기사용료 9,983천 원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사용료를 분리하지 않고 시설의 공공요금으로 전액 납부함으로써 시설예산 부당집행
-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 등 2개 시군 11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지출관련 증빙서류 없이 통신비, 사진대금, 결혼 축의금 등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4,508천 원 부당집행하였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검직이 불가한 원장의 운전원 수당, 원장의 남편 휴대폰요금,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절 인사비, 아파트발전기금, 보육교직원 가족 경조사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등 총 4,406천 원 부당집행

- **☐☐군** ◎◎◎◎어린이집 (민간, 원장 ○○○)에서는 어린이집 운행 전용차량이 아닌 남편 △△△의 자가용 차량에 2012. 1. 1.부터 2013. 6.30.까지 부과된 3차례의 자동차세 644천 원을, **▨▨▨▨**어린이집(민간, 원장 ☆☆☆)에서는 자신의 자가용 차량에 2012. 1. 1.부터 2012.12.31.까지 부과된 2차례의 자동차세 352천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총 996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
- **☐☐시** **▨**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대표 ○○○)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원장 ○○○ 개인차량을 통학버스로 활용한다고 하여 차량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총 3,297천 원을 운영비에서 부당지출

❖ 조치내용

- 배우자 휴대폰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49,161천 원은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따라 지도명령



5. 어린이집 교통비 수납 부적정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운영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고, 통학차량 이용료는 월 10천 원으로 결정되어 있음에도,
- ㄷ ㄷ시 ㉹㉹㉹㉹어린이집(법인)에서는 어린이집 원생에게 차량운행비를 징수하면서 ㉹㉹ 등 51명의 원생으로부터 수납한도액 10천 원(인/월)을 초과한 15천 원~30천 원(인/월)을 수납, 교통비 5,321천 원을 초과 징수하여 시설운영비로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어린이집에서 교통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5,321천 원은 원생 51명의 보호자에게 반환하고, ㉹㉹㉹㉹어린이집 원장 ㄹㄹㄹ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6.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과목과 다르게 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및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기타운영비는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어린이집 등 36개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납부한 271,428천 원의 보험료(화재, 상해, 자동차 등) 및 정기적금을 일반운영비에서 납부하지 않고 기타운영비에서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어린이집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어린이집 등 36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7. 어린이집 기타운영비로 장기 적립형 보험료 지출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및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등을 기타운영비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사용계획 수립 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어린이집(법인, 원장 ○○○) 등 9개소 어린이집에서는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사용계획 수립 및 세출예산의 편성 없이 대표자(원장) 명의의 장기 적립형 보험료 (매월 300~600천 원)를 어린이집 기타운영비에서 총 115,466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115,466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위 9개소 어린이집(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8. 민간어린이집 책임보험(연금보험) 가입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및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재무·회계규칙 과목해설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등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군 ㉸㉸㉸어린이집(민간)에서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연금보험을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 명의로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수용비 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과목과 다르게 7,50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조치내용

- 어린이집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어린이집(원장 ㉸㉸)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9. 어린이집 책임보험(화재보험) 만기 환급금 관리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모든 어린이집의 시설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 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 ▣ ▣군 ◎◎◎◎어린이집 (가정, 원장 ○○○), ▩▩▩▩어린이집 (가정, 원장 △△△)에서는 어린이집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각 2009. 4.17.부터 2011. 3.15.(2년)까지, 2008. 3.28.부터 2011. 3. 28.(3년)까지 ●●해상화재보험(주)에 책임보험을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하여 만기 환급금 5,687천 원 (◎◎◎◎어린이집 1,341, ▩▩▩▩어린이집 4,346)을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임의 사용
- ▣ ▣군 ▩ ▩읍 ◎◎어린이집 (민간, 원장 ○○○), ▩▩▩어린이집 (민간, 원장 △△△)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각 2008. 8.25.부터 2011.10.11.까지, 2012. 1.28.부터 2013. 4.30.까지 ●●해상화재보험(주)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만기환급금 3,783천 원 (◎◎어린이집 2,917, ▩▩▩어린이집 866)을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여 사용
- ▣ ▣군 ▩ ▩읍 ◎◎어린이집 (공립, 원장 ○○○) 등 14개소 (공립 2, 법인 3, 민간 9)에서는 2009. 3.31.부터 2014. 5.20.까지 책임보험(화재보험)을 소멸형으로 가입하지 않고, 3년부터 10년 만기 환급형 어린이집 명의로 39,600천 원 가입하고 원장 개인 명의로 101,760천 원을 가입하는 등 계 141,360천 원이 만기시 개인에게 환급금이 지급 되는 책임보험(화재보험)에 부당가입
- ▣ ▣군 ◎◎어린이집 (법인, 원장 ○○○)에서는 2009. 5.27. 책임보험 만기환급금 (계약기간 2004.6.9~2009.6.9) 4,727천 원을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원장

개인통장으로 송금토록 하여 이중 1,600천 원은 어린이집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나머지 3,127천 원은 용도불명 사용

- **진주시** **○○어린이집(법인, 원장 ○○○)** 등 35개소 어린이집에서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만기 환급금을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 통장으로 세입처리 하지 않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지체하여 세입처리 하는 등 총 187,382천 원(미 세입금 51,872천 원, 세입 지연금 135,510천 원)의 보험만기 환급금 부당처리
- **진주시** **○○어린이집(공립), ○○○○○어린이집(민간), ○○○어린이집(민간)** 등 3개시설(공립 1, 민간 2)은 2010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책임보험(화재보험)을 원장을 수령자로 하는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여 운영비 37,539천 원을 부당 지출하였으며,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한 **○○어린이집(종교단체)**을 비롯한 위 3개시설에서는 매년 적립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누락
- **진주시** **○○○○어린이집(민간)** 등 3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사전 사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없이 기타운영비 예산에서 원장명의로 변액연금 보험료 22,445천 원을 적립하고 있고, **○○○○어린이집(원장 ○○○)**에서는 2011. 9.30. 기타운영비 예산에서 별도통장에 적립해 오던 예금 5,500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문 수리비로 지출
- **진주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에서는 2007.12.11.부터 2012. 12.11.까지를 만기로 한 책임보험(화재보험) 만기환급금 6,393천 원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아 3천 원은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6,390천 원은 어린이집 신축 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으로 부당 상환하고 감사기간 중에 반납

❖ 조치내용

- 목적 외로 사용한 보험 환급금은 모두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10. 어린이집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ㄱㄱ군 ㉹㉹㉹㉹어린이집(민간, 대표자 ㉹㉹) 등 2개 시군 2개소 어린이집에 서는 하절기에 어린이 통학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고속관광과 지입차 형식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 계약(차량 1대, 계약금 1,000천 원)을 하거나 시설운영비에서 자동차(카니발, 9인승)를 구입(25,540천 원)하여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

❖ 조치내용

-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에 따라 조치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시정 요구

11.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도로교통법」 제52조,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차량운영비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 소모품 등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 ㄱ ㄱ군 ㉔㉔어린이집(법인, 원장 ㉔㉔) 등 6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통학 버스로 지정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차량에 휘발유 주유, 차량정비 등 총 28,772천 원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서 부당집행.
- ㄱ ㄱ군 ㉔㉔어린이집(법인, 원장 ㉔㉔)에서는 2013. 1. 28, 5월 27일 등 2회에 걸쳐 본인 소유 개인차량에 휘발유 300천 원을 주입하는데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 사용

❖ 조치내용

- ㄱ ㄱ군 ㉔㉔어린이집 등 7개소에서 운영비로 부당집행된 29,072천 원은 어린이집 회계로 반납하고, 위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12. 차량구입 적립금 등을 원장 개인 명의 보험 가입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2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군 ㉸㉸어린이집 (가정, 원장 ㉸㉸)에서는 2011. 9.26.부터 2013. 7.19.까지 어린이집 차량구입을 위한 적립명목으로 운영비에서 매월 696천 원, 총 14,628천 원을 적립하였고, 또한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한 적립명목으로 2012.11.23.부터 2013. 8.23.까지 매월 200천 원, 총 2,000천 원을 적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차량구입 및 개보수를 위한 적립명분으로 ㉸㉸㉸㉸생명 등에 원장 개인상해 보험 14,628천 원(계약기간 : 2011. 9.26.~2016. 9.25) 과 연금보험에 2,000천 원(계약기간 : 2012.11.23.~ 2027.11.27)을 가입하여 생존 시 수익자는 원장, 사망시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등 어린이집 운영비 16,628천 원 부당지출

❖ 조치내용

- 어린이집 차량구입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보험에 부당 적립한 16,628천 원은 어린이집 명의로 변경조치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13. 어린이집 원아 허위등록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제24조

❖ 위법·부당내용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만3~5세 유아의 보호자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중 선택하여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 □□시 ◎◎어린이집(민간)에서는 누리과정 반에 등록된 ○○○(4세), △△△(4세) 등 2명의 아동이 실제로는 같은 주소 내 ▨▨유치원에 다니는데도 허위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등재하여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만3~5세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운영비 600천 원(1인당 월 5만원) 부당지원

❖ 조치내용

-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허위등록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600천 원은 회수하고, ◎◎어린이집과 원장 ◇◇◇에 대해서는 각각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14. 민간 어린이집 과징금 운영비에서 부당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ㄷ ㄷ시 소재 ◎◎어린이집(민간) 등 5개소 어린이집(민간 2, 가정3)에서는 각 구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5건 18,600천 원을 2012. 3. 7.부터 2012. 8.14.사이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 조치내용

- 부당집행된 과징금 18,600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15.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당처리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 위법·부당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 ⅩⅩ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민간, 원장 ○○○) 등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2012. 4.30. 및 2012. 6.18. 행정처분 시 보조금 반환명령과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만 결정하고, 원장의 자격정지는 처분을 하지 않았음.

❖ 조치내용

- 위 4개소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16. 행정처분(자격정지) 기간 중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급 부적정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및 제46조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자격정지 중인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받은 기간동안 대리할 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 기존 원장(○○○)이 근무하고 10,580천 원의 급여 및 수당을 부당지급
- □□군 ◎◎◎◎어린이집(민간) 원장 ○○○은 보육료 부당청구로 □□군으로부터 2012.11. 1.부터 2012.11.30.까지 1개월간 원장 자격을 정지 받아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음에도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1,800천 원 부당수령

❖ 조치내용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기간동안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 10,580천 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인건비 1,800천 원은 시설회계에 반납 조치
-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처분기간 이내에 자격관련 업무를 수행한 원장 2명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17. 민간어린이집 운영비로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부당상환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은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차입금 상황은 일시운영 차입금에 한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등 2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신축 시 융자한 대출금의 이자를 대표자의 대출계좌로 송금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실제 납부한 대출이자보다 각각 4,207천 원, 17,438천 원 등 총 21,645천 원을 과다 지출하였고,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등 2개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신축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원장이 거주하는 주택분 대출이자 각 6,607천 원, 13,358천 원 등 총 19,965천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
- **□□군 ▨▨면 ○○○어린이집(종교단체)**에서는 2007. 7. 24. 어린이집 및 교회 신축을 위해 110,000천 원을 대출하여 2007. 8. 29.부터 2013. 8. 29.까지 어린이집 신축 대출원금 및 교회신축 분 대출이자 26,345천 원(대출원금 : 18,000, 교회이자 : 8,345) 상당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집행
- **□□군 ▨▨읍 ▨▨교회가 설립·운영하는 ○○어린이집(단체, 2002년 대표는 ○○○, 2009. 8.29.부터 대표 △△△, 변경인가 받지않음)**은 건물 신축 시 대표자가 아닌 신도(어린이집 사무국장 △△△)의 명의로 2002. 5. 27. 200,000천 원을 대출하고, 2002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어린이집 신축융자금(1~3층 : 어린이집, 4층 : 관리자 주택) 이자 109,631천 원(어린이집분 이자 94,494천 원, 주택분 이자 15,137천 원)과 △△△의 최근 5년간(2008. 7.~2013. 7.) 휴대전화요금 4,511천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당지출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단 1차례도 제출하지 아니함



- ㉸ ㉸시 ㉸㉸어린이집(대표 ○○○, 민간)과 ㉸㉸㉸어린이집(대표 △△△, 민간)은 각각 2001년 8월부터 2013년 8월, 2012. 1.20. 어린이집 신축 용자 대출원금 각 900,000천 원, 22,845천 원을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 ㉸시 ㉸㉸㉸어린이집 등 5개 민간어린이집은 2011. 7.15.부터 2013. 9.16.까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어린이집 신축 시 용자받은 대출원금 총 82,857천 원(시설당 3,807 ~56,500천 원)을 부당 지출
- ㉸ ㉸시 ㉸㉸㉸㉸어린이집 등 4개 민간어린이집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9월 까지 어린이집 신축 등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대출금 이자 100,171천 원(14,981천 원~37,500천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 지출
-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 등 2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을 담보로 금융기관(농협)으로부터 168,000천 원을 대출받아 2011. 1.25부터 2013. 9.30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18,998천 원을 원금상환으로 부당집행
- ㉸ ㉸군 ㉸㉸㉸㉸어린이집(가정, 원장 ○○○)에서는 어린이집 구입비(아파트 구입) 이자에 대해 2012. 2. 27.부터 2013. 8. 20.까지 상환 시 매월 실지 이자(433천 원 정도)보다 16천 원에서 128천 원 총 1,321천 원을 많이 인출하였고, 또한 2012월 8월 9일에는 정당한 지출명령 없이 현금 500천 원을 운영비에서 부당인출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총 1,821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 ㉸시 ㉸㉸어린이집에서 신축 용자금 원금으로 상환한 900,000천 원 등 위 어린이집 20개소에서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에 부당하게 집행된 1,214,295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
- 어린이집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위 시설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18. 어린이집 영수증 중복사용 등 보조금 부당집행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 ㉸ ㉸시 ㉸㉸어린이집(민간)과 ㉸㉸㉸어린이집(가정) 등 어린이집 2개소 이상을 운영하는 대표자 ㉸㉸을 비롯한 ㉸ ㉸시 관내 20개 어린이집(민간 12, 가정 8)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2012. 1. 1.부터 2013. 6.27.까지 영수증 중복사용, 간이영수증 허위 첨부 등의 방법으로 최소 5회 379천 원에서 최대 115회 3,677천 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총 346회 18,673천 원 부당지출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집행한 18,673천 원은 어린이집 회계로 반납하고, 지출결의서에 동일한 영수증을 중복 첨부하여 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어린이집 등 10개의 어린이집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19. 어린이집 운전기사 미성년자 고용 및 인건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1호 및 제20조 제1호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관리인, 운전기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 ▣▣군 ◎◎어린이집(민간, 원장 ○○○)에서는 '12년 7~8월과 '13년 1~4월에 ◎◎어린이집 원장 ○○○의 아들(△△△, 미성년자)을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근로계약도 없이 고용하여 총 3,200천 원을 어린이집 시설운영비에서 부당집행

❖ 조치내용

- 미성년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어린이집(원장 ○○○)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20. 어린이집 미종사자 해외연수경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조

❖ 위법·부당내용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군 ㉸㉸㉸어린이집(법인, 원장 ㉸㉸)에서는 2012.12.28.부터 2012.12.31.까지(4일간) 종사자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보육교직원이 아닌 인솔자 △△△(원장 ㉸㉸의 남편)의 연수경비 410천 원을 어린이집 시설운영비에서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어린이집 해외연수경비로 부당집행된 410천 원은 어린이집 회계로 반납하고, ㉸㉸㉸어린이집(원장 ㉸㉸)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21. 어린이집 성과상여금 등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어린이집(국공립, 원장 ○○○)에서는 2012년도 보육교직원의 성과상여금 등 제수당을 지급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성과상여금과 예산편성액(연1회, 50,000원)을 초과하여 하계휴가비로 지급하는 등 총 5,547천 원 부당집행
- ▣▣시 ▣면 ◎◎◎어린이집(대표 ○○○)은 2012.12.26. 기타후생경비에서 원장성과급(여타 교직원에게는 미지급)명목으로 6,000천 원을 지급하여 예산편성기준과 다르게 지출

❖ 조치내용

- ◎◎어린이집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보육교직원의 성과상여금 등 제수당 5,547천 원은 회수하고, ◎◎◎어린이집 원장성과급 6,000천 원은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반납
- 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22. 법인 부지구입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사회복지법인 ㉸㉸㉸재단(대표이사 ㉸㉸)에서는 2012.12.24. ㉸㉸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를 163,340천 원에 구입한 후, 어린이집 시설운영비에서 59,000천 원 부당집행
- ㉸ ㉸시 ㉸㉸㉸어린이집(대표 ㉸㉸)은 2010년 1월부터 2013. 6. 10.까지 토지매입의 명목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매월 1,000천 원~2,000천 원 총 45,245천 원을 적립 후 당초 적립목적과 달리 2013. 3. 5. 통학차량 구입에 27,270천 원을 사용하고, 잔액 17,975천 원 중 8,975천 원은 운영비로 사용, 잔액 9,000천 원은 별도통장에 적립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함

❖ 조치내용

- 법인이 취득한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편입후 그 취득재산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지구입비로 부당집행된 59,000천 원은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반납
- ㉸㉸복지재단과 ㉸㉸어린이집(대표자 겸 원장 ㉸㉸)에 대해서는 각각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23. 특별활동 외부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 등 징수 미이행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

❖ 위법·부당내용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영어 등 7개 과목에 ○○○ 등 29명의 특별활동 외부강사수당으로 136,382천 원을 지급한 ◎◎◎어린이집에서는 소득세 등 5,997천 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음

❖ 조치내용

- ○○○ 등 29명에게 지급한 136,382천원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5,997천 원은 징수하여 납부 조치

24.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시설감가상각비 등 개인용도 사용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ㄱ ㄱ시 ㉔㉔㉔㉔㉔㉔어린이집(민간)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설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월 100천 원을 대표 ㉔㉔ 명의의 ㉔㉔보험 2개 계좌에 각각 적립해오다 2012. 7. 4. 중도 해지로 환급받은 5,712천 원(각 2,856천 원)을 원장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10년 3월 수협에서 대출한 330,000천 원에 대한 대출이자(월 평균 1,411천 원)와 시설적립금(월 평균 840천 원)을 5,725천 원을 과다 지출하는 등 총 11,437천 원의 운영비를 대표자 ㉔㉔이 사용

❖ 조치내용

- 운영비에서부당하게사용된11,437천원은반납조치하고, ㄱ ㄱ시㉔㉔㉔㉔㉔㉔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25. 민간어린이집 직책수당, 자가운전비 등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및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ㄱㄱ군 ◎◎◎어린이집(민간) 대표자 겸 원장 ○○○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원장 직책수당으로 3,500천 원, 원장 및 기사(배우자) 자가운전비로 12,840천 원을 어린이집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고, 특히 군수의 승인 없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전출금(차입금 상환)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기타운영비에서 3,594천 원, 기관운영비에서 1,242천 원을 집행하는 등 총 21,176천 원을 예산과목에 편성하지 아니하거나 예산과목과 다르게 부당하게 집행

❖ 조치내용

-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한 16,340천 원은 시설회계에 반납하고, ◎◎◎어린이집 원장 ○○○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26. 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인가인원보다 초과 운영

❖ 관련법규

-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질의 혁신(2013. 9. 2)

❖ 위법·부당내용

- 시간연장 지정시설은 당초 인가된 인원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함에도,
- □□군에서는 어린이집 시간 연장반을 당초 인가된 인원 이외에 ◎◎◎◎어린이집 등 7개소(가정, 원장 ○○○ 등) 7개반 16명을 인가하고는 2011. 6. 1.부터 2013. 6.30.까지 보육료 11,683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전담보육교사 없이 시간 연장반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가정)원장 ○○○ 등 7개소 7개반 16명에 대한 지정취소하고, ◎◎어린이집 등 7개소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27.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및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 위법·부당내용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은 시설에서 부담하고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 ㉸ ㉸시 ㉸㉸㉸어린이집(대표자 ㉸㉸㉸) 등 4개 어린이집에서는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퇴직급여 9,016천 원을 시설회계 운영비로 부당하게 적립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적립된 퇴직급여 9,016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 ㉸시 ㉸㉸㉸어린이집(대표자 ㉸㉸㉸) 등 4개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28. 해외체류기간중 아동보육료 부당수급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1항 제1호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시설 및 원장에 대하여 운영정지와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원장 ㉸㉸은 다문화가정 아동 △△△이 2011. 1. 4.부터 2011. 1.30.까지(27일간) 부모의 고국 방문으로 어린이집을 결석하였음에도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278천 원을 결제하여 어린이에게 지급될 아동보육료를 원장이 부당하게 수급
-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은 2012. 2. 12.부터 2012. 3.12. (30일간)까지 부모의 고국 방문으로 어린이집을 결석한 다문화가정 아동 △△△의 보육료 341천 원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여 부당하게 수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수령한 보육료 619천 원은 회수하고, 위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29. 민간어린이집 원장 통장에 기타운영비 부당적립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시 ◎◎◎◎어린이집(대표 ○○○)은 2012. 1.30.부터 2012.12.24.까지 월 1,200천 원~2,000천 원 매월 일정액을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용도 불분명하게 원장 개인통장에 총 13,600천 원을 적립해오다 2012. 3.13. 어린이집 외 부도색공사비 7,000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 6,600천 원은 원장이 관리하고 있음

❖ 조치내용

- 원장 개인 통장에 부당하게 적립한 6,600천 원은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 명령

30. 민간어린이집 정년경과자 인건비 부담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ㄷ ㄷ시 ◎◎◎어린이집 등 11개 민간어린이집에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2회 5,952천 원, 2012년 12월부터 2013. 7.31.까지 8회 460천 원 등 총 정년경과 종사자 11명에게 40회에 걸쳐 6,412천 원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인건비 지급
- ㄷ ㄷ시 ◎◎◎◎◎어린이집 등 16개 어린이집에서 2011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정년경과 종사자 ○○○ 등 18명에게 8,250천 원,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ㄷ ㄷ시 아동복지시설 ◎◎◎학원 △△△에게 14,580천 원,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종사자 ☆☆☆ 등 2명에게 1,200천 원을 부당지급 등 21명의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정년경과 종사자에게 종사자수당 등 인건비 24,030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위 어린이집(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31. 지역아동센터 예산집행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지역아동센터 등 7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수당규정에 없는 자격수당, 야간귀가 지도수당, 인건비 항목에 없는 급여보조금, 종사자 상여금 및 명절수당 등을 부당집행하였고, 또한 시설 대표자에게 기타교실 강사로 지급,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자부담분을 시설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24,391천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
- ㉸ ㉸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에서는 시설 소유차량이 아닌 “㉸㉸교회” 차량에 차량점검비, 세차비를 지역아동센터 회비로 2012. 5. 4.부터 2012.10.19.까지 404천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에서는 시설장 ㉸㉸, 생활복지사 ☆☆☆에게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는 식대보조금으로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매월 100천 원 씩 2,400천 원을 지급하는 등 총 2,804천 원 부당집행
- ㉸ ㉸군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에서는 시설 소유차량이 아닌 “㉸㉸교회”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2013. 1. 31.부터 2013. 6.25.까지 유료 도로비, 주유비, 주차요금, 차량 점검비 명목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1,13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직책보조비를 지급 할 수 없는 피아노 강사에게 2013. 1. 31. 200천 원을 부당하게 지출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강사비로 2013. 4. 8. 250천 원을 지출하는 등 1,587천 원 부당집행

- □ □지역 5개소(◎◎·▨▨▨▨·▩▩▩▩·▯▯▯▯·▱▱▱▱)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사자 및 돌보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한 2013년도 보조금 122,400천 원을 집행하면서 시설장이 현금 사용 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930천 원을 되돌려 받았고, 보조금 전용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시설장 개인 카드를 먼저 사용 한 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3,080천 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4,018천 원 부당집행
- □ □시 ◎◎지역아동센터(시설장 ○○○) 등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208천 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 까지(172천 원) 소속 아동이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단체 활동 등으로 출석 하지도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하고 급식 보조금 338천 원 부당집행
- □ □시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에서는 학습프로그램진행에 부적합한 시간제 교사에게 학습프로그램 강사비 2,570천 원,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에서는 음악전문가가 아닌 조리사에게 음악교육프로그램 강사비 500천 원,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미술치료프로그램 강사비 100천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170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지역아동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한 급식비와 강사비 등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16,060천 원은 회수하고, 위 아동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2.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개인사용 전기, 수도료 등 시설비로 부담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 ◎◎원(원장 ○○○), ▩▩육아원(원장 △△△) 등 2개 아동양육시설의 대표자가 시설에 거주하면서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료 7,004천 원을 시설 공공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

❖ 조치내용

- 시설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원(원장 ○○○)과 ▩▩육아원(원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험료 지급 부적정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법·부당내용

-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시 관내 3개소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7명에 대한 4대 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가입자 부담분을 개인급여에서 각각 공제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8,437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부담한 7명의 4대 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등 총 8,437천 원 중 2012년도 분 4,576천 원은 회수, 2013년도 분 3,861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조치하고, ㉸㉸㉸ 등 3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군 ◎◎◎◎◎협의체(공동위원장 ○○○)에서는 2012. 6.11.부터 2012. 6.15.까지 일본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군에서 보조금(19,950천 원) 일부를 부담하고 차액은 자부담한다는 방침을 득하였음에도 연수 참가자들은 개인부담 없이 보조금 외에 참가비 명목으로 7,300천 원(시설별 30~50만원)을 어린이집 등 시설운영비에서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경비로 부당집행된 7,300천 원은 회수하고, 위 어린이집 및 아동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지도 및 개선명령

35. 지역아동센터 강사수당 등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5조, 아동분야 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배치 기준은 이용아동 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이므로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상근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고유업무외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 ㉸ ㉸군 ㉸㉸㉸지역아동센터(센터장 ㉸㉸) 등 2개소 아동센터에서는 상근근무자인 종사자들이 고유업무가 아닌 센터의 학습지도 강사, 차량운전원 등으로 활용하여 강사료 3,300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학습지도 강사료 등으로 부당집행된 3,300천 원은 지역아동센터 회계로 반납하고, ㉸ ㉸군 ㉸㉸㉸지역아동센터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6. 사회복지시설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군 ㉸㉸보육원(법인, 원장 ㉸㉸)에서는 기능보강(개축) 사업의 변경에 따른 자부담분 142,785천 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241,110천 원) 하면서, 2013. 6.12. ㉸ ㉸ ㉸도로부터 재산처분 허가를 득한 후에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3. 7.26. 처분을 하였고, 위 재산 처분액 중 자부담분을 제외한 98,315천 원을 법인재산으로 재 편입과 정관변경 절차 미 이행

❖ 조치내용

- ㉸㉸보육원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 이행과 재산 처분액(241,100천 원) 중 자부담 총당금의 차액인 98,315천 원을 법인재산으로 재 편입 조치하고, ㉸㉸보육원(원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7. 사회복지시설 정년경과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어린이집 원장 ㉸㉸(69세) 등 9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인건비를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인건비 40,574천 원 지급

❖ 조치내용

- 보조금으로 지급된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경과자 인건비 2013년도 분 21,758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위 어린이집 9개소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3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미충족기간 인건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위법·부당내용

- 정원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지역아동센터의 고유업무에 필요한 종사자의 직종과 수 등 배치기준은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 사회복지법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2. 2. 1.부터 2012. 2.28.까지,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각 1개월과 2개월 정도 종사자(생활복지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 동안 ㉸시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인건비 3,958천 원을 ㉸시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하여 운영비로 사용

❖ 조치내용

- ㉸㉸㉸㉸㉸지역아동센터가 부당 수령한 2012년 2월분 인건비 1,358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 1월 ~ 2월분 인건비 2,600천 원은 4분기 운영비에서 상계 처리하기 바라며,
- 생활복지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39. ○○○○○○○○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집행

❖ 관련법규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및 제24조, 「○○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간외 근무는 사전에 근무자가 직접 자필 등으로 시간외 근무를 신청 하고 결재를 득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거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군 소재 (사)○○○○○○○○○○○○○○○○센터(대표 ○○○)에서는 2012년 ~ 2013년 여성농업인 센터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종사자 (상담사, 운전기사, 사무장) 3명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 오다가 감사기간 중에 시간외 근무대장을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시간외 근무수당 25,985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시간외 근무수당의 목적 외로 지출된 보조금 25,958천 원 중 2012년도분 16,788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도분 9,197천 원은 (사)○○○○○○○○○○○○○○○○센터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40.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

❖ 위법·부당내용

-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어린이집(대표 ㉸㉸)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영어 등 3개 과목에 △△△ 등 3명에게 특별활동 외부강사 수당으로 지급한 60,300천 원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653천 원 미징수

❖ 조치내용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영어 등 3개 과목 3명의 특별활동 외부강사 수당을 지급 하기도 징수하지 않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2,653천 원 납부조치
- ㉸ ㉸시 ㉸㉸㉸㉸㉸㉸어린이집(대표 ㉸㉸)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1. 민간어린이집 건축공사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8조,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 ㄷ ㄷ시 ◎◎◎어린이집(대표 ○○○)은 2013. 3.20. 어린이집 3층 옥상에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증축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시설비로 16,500천 원 지출 후에 불법임을 인지하여 철거하고, 다시 적법철차에 따라 증축 중에 있고, ㄱㄱㄱ어린이집(대표 △△△)에서는 2013. 5.24. 기존유치원과 어린이집 건축합병 및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설계용역비 2,500천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시설비)에서 집행

❖ 조치내용

- 어린이집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19,000천 원은 운영비로 반납조치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2. 어린이집 기타후생경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법인, 원장 ○○○)에서는 2012. 3. 5.부터 2013. 9.15.까지 모두 4회에 걸쳐서 기타후생경비로 종사자 명절선물 지급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구입하여 배부하면서 2,000천 원은 지출처가 불명(원장, 대표이사에게 이중배부)하는 등 구체적인 지출 증빙서류 없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지출처가 이중(또는 불명)인 상품권 구입액 2,000천 원 중 2012년도 분 1,000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도 분 1,000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3. 어린이집 차량 등록 부적정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동차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야 함에도,
- ㄷ ㄷ시 소재 시립㉹㉹어린이집(공립) 등 2개 공립어린이집에서는 ㉹㉹ 등 2명에게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관리하면서 운영비로 구입한 어린이 통학차량 등 2대(구입가격 57,433천 원)를 등록하면서 2012. 6. 1.부터 2012. 9.18.까지 어린이집 위탁자인 ㄷ ㄷ시장 명의를 아닌 수탁자인 개인 명의로 부당등록

❖ 조치내용

- 어린이집 원장 개인명의로 아닌 위탁자 시설명의로 변경 등록 조치하고, 위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4. 공립 어린이집 차량관리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보육사업 안내, ㉸ ㉸군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계약서

❖ 위법·부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리·운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 ㉸ ㉸군으로부터 민간 위탁받아 운영하는 ㉸㉸ 및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차량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2대를 구입 한 후 차량등록을 할 때 차량 소유자를 위탁자인 ㉸ ㉸군수가 아닌 수탁자인 ㉸㉸, ㉸㉸ 개인 명의로 각각 등록하여 운행하는 등 차량관리 부적정
- ㉸ ㉸군 ㉸㉸어린이집(원장 ㉸㉸)과 ㉸㉸어린이집(원장 ㉸㉸)에서는 개인(원장의 오빠, 보육교사의 남편)소유의 자가용 차량을 원장명의로 등록(원장과 사인 간 협약체결)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2010년~2012년까지 임대한 차량 보험료 3,409천 원 부당지출

❖ 조치내용

- 공부상 자동차 소유권 등 권리자를 어린이집 원장 개인명의로 아닌 위탁자 시설명의로 변경 등록 조치하고,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부당하게 납입한 임대차량 보험료 3,409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라며, 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5. 어린이집 예산으로 타 시설물 공공요금 부담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ㄱ ㄱ시 ㉔㉔어린이집(민간, 원장 ㉔㉔) 등 10개소의 어린이집(민간 1, 가정 8, 단체 1)에서는 동일 건물 내 다른 용도의 사무실 점용으로 어린이집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상하수도사용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총 18,544천 원을 운영비에서 부담집행

❖ 조치내용

- 어린이집 운영비로 주거시설 등 다른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고, 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6. 어린이집 과징금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운영정지에 같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 ㉸군 ㉸㉸어린이집(법인, 원장 ㉸㉸) 등 2개 시군 5개소 어린이집에서는 과징금 14,100천 원을 납부하면서 어린이집 시설운영비에서 부당집행

❖ 조치내용

- 부당집행된 과징금 14,100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위 어린이집(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7. 어린이집 차입금 부당차입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5조 및 보육사업 안내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일시운영 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에도,
- ㉸ ㉸시 ㉸㉸어린이집(국공립, 원장 ○○○) 등 306개소 어린이집에서는 2012~2013년도에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급·간식비, 4대 보험료 납부 등을 위해 총 6,413회에 걸쳐 일시차입금 7,024,331천 원을 ㉸ ㉸시와 별도의 협의도 없이 어린이집 원장(또는 대표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부당차입 하였고, 특히 2013년도에는 어린이집 원장(또는 대표자)으로부터 차입은 금지하고 있음에도 2,168,399천 원을 부당하게 차입하여 사용
-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 대표 △△△)에서는 원장 ○○○이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어린이집 대표)와 그의 처 △△△(㉸㉸어린이집 대표)을 공동 임대인으로 전세보증금 150백만원 지급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작성한 후, 위 계약서의 내용에도 없는 월 임차료 명목으로 총 108,219천 원(원장부담 23,001천 원, 시설운영비 85,218천 원)을 집행하면서 어린이집 시설운영비에서 85,218천 원 부당집행
- ㉸ ㉸시 ㉸㉸어린이집(법인, 원장 ○○○)에서는 과징금 24,329천 원 납부와 건물 감가상각비 19,000천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43,000천 원을 △△△(원장의 아들)으로부터 차입한 후, 어린이집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 없이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어린이집 시설운영비에서 △△△에게 43,329천 원 부당집행



- ㄱ ㄱ시 ◎◎◎어린이집(가정)에서는 2011년 발생한 과년도 차입금을 2012. 1. 4.부터 2012. 4.16.까지 7회 8,243천 원을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2012년 운영비에서 상환금으로 부당집행
- ㄱ ㄱ시 ◎◎◎어린이집(원장 ○○○) 등 31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2013년 1월부터 173,923천 원을 시설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차입하였으며, 또한 차입금을 어린이집의 운영 예산에 계상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타운영비 과목으로 상환하는 등 어린이집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

조치내용

- 어린이집 차입금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8.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 등 3개소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원장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및 대표자 종합보험비 등 7,076천 원을 시설운영비에서 부담지출
-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8,000천 원씩(모두 160,000천 원) 원장 명의 통장으로 지출명령도 없이 적립하였으며, 예산에서 정한 기타운영비(건물대출이자, 차량할부금, 놀이터 공사비)의 예산액보다도 7,019천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였음.

❖ 조치내용

- 운영비로 부당하게 초과 지출된 14,0959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49.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시행일 2005. 1. 1.)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할 때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의 내규 등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군 ㉸㉸㉸㉸어린이집(민간) 원장 ㉸㉸은 어린이집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공개모집을 하지않고 2006.10. 9.과 2009. 2. 2.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에 형제(2명), 2009. 1. 5. 운전기사와 취사부에 부모(2명)를 부당하게 채용

❖ 조치내용

- ㉸ ㉸군에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촉구

5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부적정

❖ 관련법규

-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 할 수 없으며 휴가, 휴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평일 8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상시 해당업무에 종사 하도록 겸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 ㉸㉸군 ㉸㉸㉸㉸어린이집 (민간, 원장 ㉸㉸)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가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어 보육교사로 채용이 불가능한 △△△을 채용 하여 2012. 3. 2.부터 2013년 7월 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 21,420천 원 부당집행
- ㉸㉸어린이집 (민간, 원장 ☆☆☆)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를 채용하여 2013. 2. 5.부터 2013년 7월 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도록 하고 인건비 6,564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겸임을 한 ㉸㉸㉸㉸ 어린이집 보육교사 △△△, ㉸㉸ 어린이집 보육교사 ◇◇◇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하고, 겸직이 불가능한 자격증 소유자 등이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보육시설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51. 민간어린이집 입·퇴사자 인건비 과다 지급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보육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종사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군 ㉸㉸어린이집(민간) 원장 ㉸㉸은 2012. 7. 24.과 2013. 2. 26. 각각 퇴직 및 입사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계산하여 388천 원을 과다지급

❖ 조치내용

- 과다 지급한 인건비 388천 원은 시설회계에 반납하고, ㉸㉸어린이집 원장 ㉸㉸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52. 민간어린이집 정년경과자 인건비 부당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군 ㉸㉸어린이집 등 5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 정년관련 규정에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2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9회 450천 원, 2012년 12월부터 2013. 7.31.까지 5회 250천 원 등 총 정년경과 종사자 6명에게 14회에 걸쳐 700천 원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인건비 지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위 어린이집(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53. 어린이집 시설종사 입·퇴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위법·부당내용

- 장애아 등 취약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군 ◎◎어린이집(국공립, 원장 ○○○)에서는 신규 및 퇴직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 61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어린이집(법인, 원장 △△△)과 ▨▨▨어린이집(국공립, 원장 ☆☆☆)에서는 퇴직보육교직원과 퇴직운전기사에 대하여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 268천 원 부당지급
- ▨▨▨어린이집(국공립, 원장 ◇◇◇)에서는 신규채용자에게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 47천 원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총 376천 원 과다 지급
- □ □시 ◎◎◎어린이집(대표자 ○○○)에서는 2011. 1월부터 2012. 12월까지 대표자의 퇴직급여 3,369천 원을 시설운영비로 부당하게 적립
- □ □시 ◎◎◎원(대표자 △△△) 등 3개 아동시설에서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90,550천 원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적립
- □ □시 ◎◎어린이집(민간) 등 21개 어린이집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 등 38명의 종사자들에게 신규채용 및 퇴직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계산하여 총 5,577천 원 과다 지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위 어린이집(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54.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위법·부당내용

-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 ㉸ ㉸군 ㉸㉸㉸㉸㉸어린이집(법인, 원장 ㉸㉸㉸)에서는 어린이집 시간연장반 부모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1인당 60천 원/월)을 위 시설의 조리사 수당으로 2,850천 원 부당집행
- ㉸ ㉸군 ㉸㉸㉸지역아동센터(시설장 ㉸㉸㉸), ㉸㉸㉸지역아동센터(시설장 ㉸㉸㉸), ㉸㉸㉸지역아동센터(시설장 ☆☆☆), ㉸㉸㉸지역아동센터(시설장 ◇◇◇) 등 4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후원금 수입 317,902천 원이 있었음에도 ㉸ ㉸군에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
- ㉸ ㉸시 ㉸㉸육아원(원장 ㉸㉸㉸)에서는 2012. 1.12. 2011년도 숙사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10,000천 원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사업포기로 인해 설계용역 비용을 낭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지정 후원금에서 사용금지 된 잡지출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

❖ 조치내용

- 부당집행된 후원금 12,850천 원은 어린이집 회계로 반납하고, 위 어린이집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5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금 처리 부적정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금의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 □□군 ◎◎◎어린이집(민간) 원장 ○○○은 1년 미만 근무자인 보육교사 △△△(2012. 2.29. 퇴직)의 퇴직적립금 980천 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퇴직자인 △△△에게 지급하였고, ☆☆☆ 등 4명은 재직기간 대비 퇴직적립금을 잘못 산정하여 2,455천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3,435천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민간) 원장 ○○○은 ◇◇◇가 2011. 3. 5. 퇴직하였는데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2. 5. 본인의 계좌로 ◇◇◇의 퇴직적립금 3,000천 원을 수령하고 유용하였으며 경상남도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실시기간인 2013. 8. 6. 퇴직자 ◇◇◇ 계좌로 지급
- □□시 사회복지시설 ◎◎◎◎◎, ▨▨▨▨▨▨에서는 2010. 7. 1.부터 2012. 5.31.까지 종사자 ○○○ 등 4명의 퇴직자에게 당초 적립금 보다 더 많은 1,262천 원 부당지급
- □□시 ◎◎◎지역아동센터(대표자 ○○○)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 퇴직적립금 2,554천 원을 대표자의 자 △△△ 명의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저축보험에 부당으로 적립하였고, ▨▨▨지역아동센터(대표자 ☆☆☆)에서는 대표자의 퇴직적립금 819천 원 부당적립
- □□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적립해야 할 퇴직금 11,614천 원 중에 1,614천 원을 미 적립

- ㉠ ㉠군 ㉠ ㉠읍 ㉠㉠㉠㉠에서는 ㉠㉠ 등 2명의 1년 미만 종사 후 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447천 원을 보조금 정산절차에 의거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 양원 ㉠㉠㉠, ㉠㉠㉠어린이집 ☆☆☆ 등 4명의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1,834천 원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았음.
- ㉠ ㉠군 ㉠ ㉠면 ㉠㉠㉠어린이집(종교단체) 등 보육시설 5개소(단체 1, 법인 3, 민간 1)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미만 종사 후 퇴직한 ㉠㉠ 등 28명의 퇴직적립금 13,257천 원을 반납(보조금 : 10,183천 원, 자부담 : 3,074천 원)조치 하지 아니함.
- ㉠ ㉠군 ㉠ ㉠읍 ㉠㉠㉠어린이집과 ㉠㉠㉠어린이집(대표자 ㉠㉠)에서는 2012. 8.14.부터 2013. 7.15.까지 24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종사자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23,150천 원을 인출하여 목적 외로 사용 후 17,850천 원만 재입금하고 5,300천 원 미입금.
- ㉠ ㉠군 ㉠ ㉠읍 ㉠㉠㉠어린이집(민간)과 ㉠ ㉠군 ㉠ ㉠면 ㉠㉠㉠어린이집(법인)에서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단순 신청에 의하여 2012. 4.25.과 2013. 3. 6. ㉠㉠ 등 재직 종사자 13명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각각 2,750천 원, 16,220천 원 합계 18,970천 원 부당지급
- ㉠ ㉠군 ㉠ ㉠읍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시설에서는 2011. 1.31.부터 2013년 8월까지 대표자겸 시설장 ㉠㉠ 등 5명의 퇴직적립금 9,670천 원을 보조금으로 부당적립
- ㉠ ㉠시 ㉠ ㉠읍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시설에서는 2010. 2. 1.부터 2013년 7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인 대표자겸 시설장 ㉠㉠ 등 5명의 퇴직적립금 9,156천 원을 운영자 몫으로 부당적립
- ㉠ ㉠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에서는 대표자와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운영 보조금에서 3,047천 원을 부당하게 적립



- ▣ ▣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에 서는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어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닌데도 2011년 1월 부터 2012년 12월 까지 퇴직금 7,101천 원 부당하게 적립
- ▣ ▣군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에서는 대표자와 시설장이 겸직하고 있 어 사용자는 퇴직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닌데도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퇴직금 1,650천 원 부당 적립
- ▣ ▣시 ◎◎지역아동센터(대표 ○○○) 등 12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12명은 건 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운영비에서 총 19,567천 원 부당집행하였고, 종사자 부 담분 1,024천 원을 개인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부당 하게 지출

❖ 조치내용

- ◎◎◎어린이집 등 6개 시설에 적립되어 있는 28명의 퇴직적립금 총 13,257천 원 중 2012년도 이전 보조금 9,189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도 보조금 993천 원과 시설부담금에서 부담한 3,073천 원 등 4,066천 원에 대하여는 시설운영비 계좌로 반납
-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적립한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 적립금 9,670천 원 중 2012년까지 집행한 과년도 보조금 7,740천 원은 회수조 치하고, 2013년도에 부당집행한 1,930천 원은 당해 지역아동센터 회계로 반납
- 위 어린이집 및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및 「사회복지사업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각 조치

56.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국민건강보험료 부당납부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 위법·부당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대표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될 수 없으며, 종사자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군 ㉸ ㉸읍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 7월까지 대표자 ㉸㉸㉸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24천 원 상당을 보조금으로 부당 납입
- ㉸ ㉸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4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시설장(종사자)이 아닌 대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1,500천 원상당을 보조금에서 부당 납입

❖ 조치내용

- 부당집행된 보조금 3,024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대표자 건강보험료 등에 보조금을 부당집행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개선명령



57.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익계약 운영요령

❖ 위법·부당내용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대표 ○○○)에서는 “2012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35,080천 원을 교부받은 후 태양열온수 및 뿔스 설치, 방부목 도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주시기가 비슷하므로 전체 설계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에서 계약상대를 결정해야함에도 (주)●●●건업(대표 △△△) 등 3개 업체와 수익계약(100%) 하여 4,299천 원(87,745%) 상당의 예산낭비 초래

❖ 조치내용

- 기능보강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58. 법인 취득재산(어린이집 놀이터) 보고 누락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제24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 ○○시 사회복지법인 ○○○○재단(대표이사 ○○○)에서는 2012.12.24. ▨▨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를 163,340천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그 취득재산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3년 9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조치내용

- 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재단법인으로 편입과 그 취득재산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지구입비로 부당집행한 59,000천원은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반납토록 조치
- ○○○○재단과 ▨▨어린이집(대표자 겸 원장 ○○○)에 대해서는 각각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59. 어린이집 정년 경과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상한 기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ㄷ ㄷ시 ◎◎어린이집(민간, 원장 ○○○) 시간연장형 교사 △△△(68세)는 종사자 정년 60세를 경과하였음에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지 않고 2013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보조금으로 인건비 8,400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8,400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어린이집(원장 ○○○)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60. 사회복지시설 정년 경과자 인건비 부담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위법·부당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노인실비요양원, ▨▨▨▨▨▨전문요양 시설 등 2개 노인요양시설 ○○○ 등 2명과 ▨▨▨▨▨▨어린이집 등 26개 어린이집 종사자 △△△ 등 29명, 총 28개 사회복지시설에서 ○○○ 등 31명의 정년경과 종사자에게 종사자수당 등 총 29,655천 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부담지급

❖ 조치내용

- 정년경과 종사자에게 부담지급한 인건비 등은 반납하고,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



6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부적정

❖ 관련법규

-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을 교부 할 때 도 자부담의 투명성과 확실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조건부로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조경공사 등은 자부담으로 하며 보조금 집행을 금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군에서는 2012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인 ◎◎◎◎◎(원장 ○○○)에 2012년도에 보조금을 교부 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2013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 되는데도 조기집행 사유로 보조금의 약 87%에 해당하는 1차분 보조금 520,038천 원을 2012. 6.25. 교부하여 법인에서 2013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2013. 2.25. 집행하므로써 장기간 미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2차분 보조금 79,962천 원에 대해서도 2013. 6.28. 교부함으로써 2013. 9.23.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적정하게 교부
- ☐☐군 ◎◎어린이집 (공립, 원장 ○○○)에서는 2013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보수)을 집행하면서 기계설비·도장·방수공사를 포함한 단일공사이고 발주시기도 비슷하므로 전체 설계서를 작성 하여 전문건설업종인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참가자격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고 공사분할 발주는 물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 수의계약 (87,745%)을 하지 않아 3,700천 원 상당의 예산낭비 초래

❖ 조치내용

- 위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명령하고, 기능보강사업의 예산집행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62. 아동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 관련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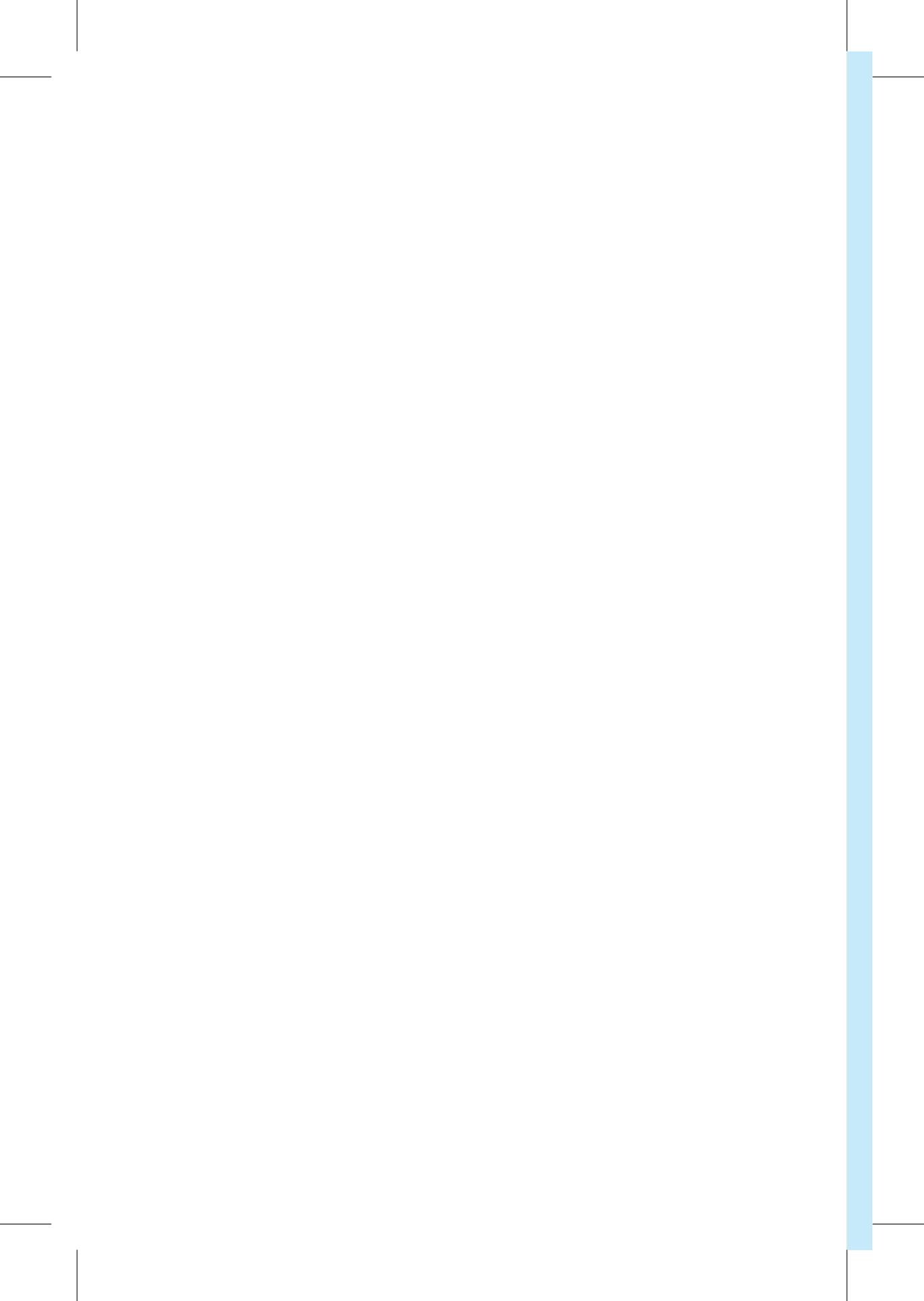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 위법·부당내용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은 시설에서 부담하고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 □ □ □ □ □ ◎◎◎◎◎(아동양육시설) 등 4개 시설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대표자 ○○○)은 7,065천 원, ▨▨지역아동센터(대표자 △△△) 등 3개 아동시설은 2,646천 원, 총 9,711천 원의 퇴직급여를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적립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적립된 퇴직급여 9,711천 원 중 2012년도에 적립된 6,215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도에 적립된 3,496천 원은 시설회계에 반납 조치하고, 4개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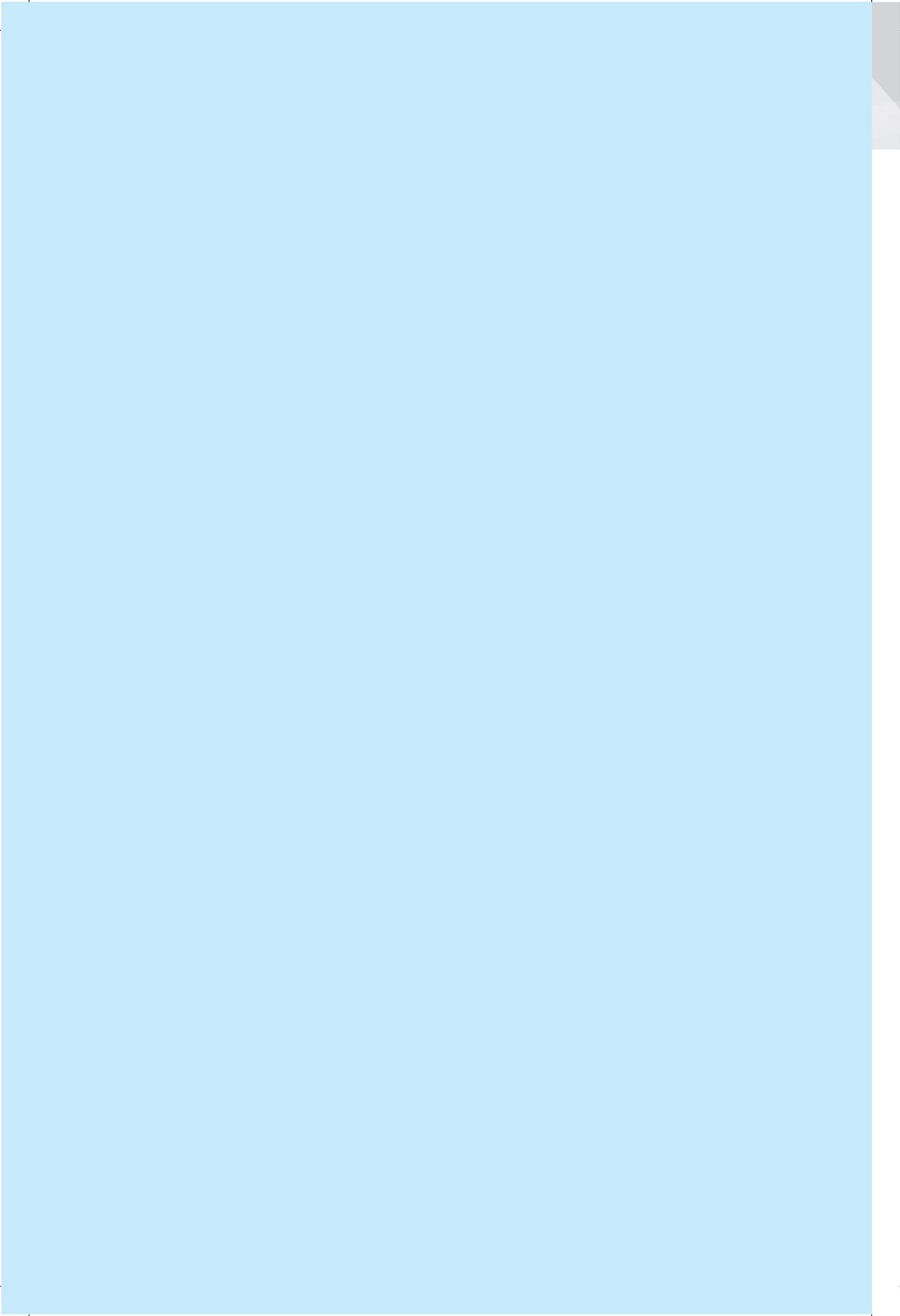
GYEONGNAM

IV

노인·청소년 분야

2013년
사회복지분야 감사 사례집





Ⅳ 노인·청소년 분야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원장의 사적용도로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34조 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 △△군 △△면 ○○○○○○(원장 ○○○)은 골프장 이용, 백화점 쇼핑 등 사적인 용도에 50여 차례 19,003천 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원장 전용차량으로 임차한 제네시스 임차료로 40,32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고, 벤츠를 임차하여 2013. 6.25.까지 보증료 30,000천 원과 임차료 14,26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 또한 증빙서류없이 원장의 형인 △△△에게 2,000천 원, 매월 지급하는 직책수당 외에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1회당 300천 원~2,000천 원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18,400천 원,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364천 원 등 원장의 사적인 경비로 총 124,363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 2009년 570,000천 원의 차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320,000천 원만 승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허하자 지인(☆☆☆)으로부터 불허금액인 250,000천 원을 연리 14.4%(월3,000천 원)에 장기 차입하여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자만 126,000천 원을 지출하는 등 73,500천 원 상당[사채와 시중은행 금리(평균 6%)의 차액]의 재정손실 초래



- ○○군 ○○면 ○○○○○(원장 ○○○)에서는 최근 5년간 원장의 지인 등에게 54,452천 원 상당의 경조사 및 협찬금 지출을 비롯하여 본인 교통법칙금, 골프장 이용요금 등 총 74,360천 원 상당을 법인예산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원장의 장모이며 사실상 사용자는 원장임)의 이동전화요금 6,094천 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전용 자동차인 그랜저승용차를 2009년 2월 구입하여 운행 중 오래되었다는 사유(차령 4년 2월)로 2012년 4월 45,194천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8,482천 원을 법인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출하였음.
- 또한, 2012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공동주관 2012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중 51,600천 원을 임직원 43명에게 특별성과금으로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 원장에게는 성과금 2,000천 원 외에 14,000천 원을 추가로 지급

❖ 조치내용

- ○○○○○(원장 ○○○)에서 원장이 사적인 경비에 부당하게 집행한 94,454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
 - 또한, 원장 사적 용도의 경조금 및 협찬금 등을 법인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 원장 ○○○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 고발하고, 법인회계에서 개인용도의 지출이 추가 확인 시 수사결과에 따라 반납조치
- ○○○○○(원장 ○○○)에서 부당하게 사적인 용도로 집행한 법인카드 이용액 등 39,767천 원과 원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벤츠)의 임대보증금 30,000천 원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별도 분리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를 문란하게 운영한 ○○○○○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43조 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
 - 또한, 법인예산을 원장의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지출함은 물론 도지사의 허가 없이 250,000천 원을 장기차입하여 시설운영비로 126,000천 원의 이자를 집행한 ○○○○○ 원장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및 「노인복지법」 제55조의4 해당자로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 고발하고, 법인회계에서 개인용도의 지출이 추가 확인 시 수사결과에 따라 반납조치

2. 노인복지시설 기관운영비 등을 유류비 등 사적 사용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제42조 제2항

❖ 위법·부당내용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ㄱ ㄱ시 ㉔㉔㉔㉔㉔㉔(대표자 겸 원장 ㉔㉔)에서는 2009. 2. 4.부터 2013. 6.30.까지 기관운영비 등으로 원장(㉔㉔) 개인차량에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지출하였고, 경조사 및 협찬금과 선물카드, 상품권, 버버리 숙녀상의 의류 구입, 골프웨어, 골프장 이용, 건강식품을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특히, 매월 급여일에 보조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보조비는 지급규정도 없이 1회당 300천 원에서 1,000천 원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원장의 사적 용도로 총 109,988천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음.

❖ 조치내용

-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1,092천 원은 회수하고, 장기요양급여 및 입소비용으로 부당집행한 108,896천 원은 시설 회계로 반납
- ㄱ ㄱ시 ㉔㉔㉔㉔㉔㉔(대표자 겸 원장 ㉔㉔)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㉔㉔)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 고발



3. 사회복지법인 ○○○○○ 시설잉여금 부당전출로 개인토지 구입비 등 사용

❖ 관련법규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운영비(반드시 운영총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 잉여금에 대하여 법인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ㄱ ㄱ시 ○○○○○재단(대표 ○○○)에서는 법인시설인 ㄱ ㄱ군 ㄴㄴㄴㄴㄴㄴㄴㄴㄴ센터(시설장 △△△)가 시설회계로 운영총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설잉여금으로 2011.10.25.부터 2013. 9.23.까지 총 5회 58,500천 원을 법인으로 부당전출 하였고, ○○○○○재단 법인에서는 2012. 1. 4.부터 2013. 2.18.까지 시설장 □□□ 개인이 소유한 ○○○ 소재 토지구입을 위하여 중도금 23,500천 원, ㄴㄴㄴㄴㄴㄴㄴㄴㄴ센터 공사비 상환 20,000천 원, 법인회계계좌 15,000천 원 보관 등으로 총 58,500천 원 부당사용

❖ 조치내용

- 부당집행한 58,500천 원은 법인회계로 반납하고, 법인전출금을 부당 사용한 ㄱ ㄱ시 ○○○○○재단 대표 ○○○, ㄱ ㄱ군 ㄴㄴㄴㄴㄴㄴㄴㄴㄴ센터 시설장 △△△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4. 노인복지센터 정년경과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요양원 등 5개 시·군 15개 시설에서 정년 경과자에 대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80,390천 원을 보조금으로 부당집행하였음.

❖ 조치내용

- 2013. 1월 이후 부당하게 지급된 정년경과자 인건비는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요양원(대표자 ◇◇◇) 등 15개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5.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 ○○○○○○○○○요양원 등 5개 시·군 9개 시설에서는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닌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34,199천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음.

❖ 조치내용

-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적립된 퇴직금 34,199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요양원(원장 ◇◇◇) 등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6.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적립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법·부당내용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 ㄷ ㄷ군 ㉹㉹㉹㉹요양원(원장 ㉹㉹)에서는 2011년 6월 최초설립일부터 2013년 7월까지 종사자 24명의 퇴직적립금 37,719천 원(요양원 부담)을 적립하지 않음.

❖ 조치내용

- 미적립된 종사자 퇴직적립금 37,719천 원은 시설회계로 적립되도록 조치하고, ㉹㉹㉹㉹요양원(원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9.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등 부당 지출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위법·부당내용

- 민간이전 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정산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 ㉸군에서는 2012. 1. 1.부터 2013. 3.31.까지 ㉸㉸㉸㉸ 등 11개소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당한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372,672천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 ㉸읍 ㉸㉸㉸㉸경로당과 ㉸㉸㉸㉸노인회에서는 경로당 별도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총 13,734천 원 부당지출

❖ 조치내용

- ㉸ ㉸㉸㉸㉸경로당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무료 급식비 13,734천 원 중 2012년도분 9,044천 원은 회수하고 2013년도분 4,690천 원은 시설 회계로 반납
- 앞으로는 경로식당 운영비를 간이영수증 또는 부당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10. 시설 운영총당금으로 대표자 개인연금 보험 가입

❖ 관련법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복지시설 회계처리 기준

❖ 위법·부당내용

- 운영총당적립금은 기관의 경영환경 따른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 안정적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임에도,
- ㉸㉸시 사회복지법인 ㉸㉸㉸(대표 ㉸㉸㉸)에서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대표 ㉸㉸㉸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기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험료 총 31,680천 원(월 990천 원)을 시설운영 총당금에서 부당집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적립한 31,680천 원은 시설 회계에 반납 조치하고, 위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1.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시설장 개인명의 적립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운영충당적립금은 원금손실(조기해지시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시 적정 자금인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의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군 ㉿㉿㉿㉿요양원에서는 2010년 운영충당적립금 41,000천 원을 대표자의 처(○○○)를 만기수익자로 하면서 저축성 상품이 아닌 화재보험으로 가입하였고, 2011년 환경개선준비금 3,200천 원은 대표자 개인(△△△)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였음.
- ㉿㉿㉿㉿㉿㉿(시설장 ☆☆☆)에서는 2010년 운영충당적립금 16,500천 원을 시설장을 피보험자로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이 시설장에 돌아가게 하였고, 2011년 운영충당적립금 10,000천 원은 시설장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운영충당적립금 목적에 부적합하게 관리

❖ 조치내용

- 시설장 개인명으로 적립된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70,700천 원은 (㉿㉿㉿㉿요양원 44,200천 원, ㉿㉿㉿㉿㉿㉿ 26,500천 원)은 시설명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시설회계로 반납
- ㉿㉿㉿㉿요양원,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2. ○○○○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법인 자부담금 사용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로, 시설은 시설 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ㄱ ㄱ시 ○○○○요양원 (원장 ○○○)에서는 2012.11.23.부터 2013. 9. 15.까지 기능보강사업 (증축)을 추진하면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2012. 8. 20. ○○○○요양원 시설회계에서 법인전출금(후원금 수입) 명목으로 법인 계좌로 50,000천 원을 전출하여 부당하게 집행

❖ 조치내용

- 시설회계 비지정 후원금에서 전출이 불가능한 법인전출금 50,000천 원은 시설회계에 반납조치하고, ○○○○요양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3.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국외 및 국내여비 부당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위법·부당내용

-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여비는 개산급으로 사전에 출장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시설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군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원장 ○○○은 2012. 1. 1.부터 2013. 7.31.까지 출장 후 증빙서류 없이 여비지급 56건 4,907천 원, 원장 개인 해외경비로 2,195천 원, 해외여비 예산이 800천 원임에도 직원 해외연수 경비로 2,927천 원을 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목적예산을 초과한 2,127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한 여비 4,322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요양원(원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4. 노인요양시설 운영충당적립금 등 사용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운영충당적립금은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등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 ㉸㉸면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노인요양원 ㉸㉸㉸과 ㉸㉸㉸을 운영하면서 2012. 6.13.부터 2013. 4.25.까지 시설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190,000천 원에 대하여 운영충당적립금의 적립목적과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과는 다르게 '㉸㉸㉸㉸㉸ 보육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선금급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0,000천 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50,000천 원을 부당하게 사용

❖ 조치내용

- 노인요양원 ㉸㉸㉸(시설장 ㉸㉸㉸)과 ㉸㉸㉸(시설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 노인요양원에서 운영충당적립금과 수입금을 관련법령 등 지침과 다르게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촉구



1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제3항

❖ 위법·부당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은 자가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기능보강(신·증축)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은 설계·감리비용 등을 제외한 건축공사 비용에만 총당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축·토목설계비 71,807천 원(◎◎ 70,367, ㉸㉸㉸㉸㉸ 1,440)을 포함하여 2012. 5. 4.과 2013. 7. 5.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2012. 9.25. 등 3회에 걸쳐 설계용역비 71,807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자부담 재원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 주의 조치



17. ○○○○○○요양원 환경개선준비적립금 장기 사장(死藏)

❖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노인복지법」 제34조

❖ 위법·부당내용

-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시 사회복지법인 ○○○○○○요양원(대표 ○○○)은 2006년도 신축하여 정원(96명)대비 현원(76명)이 상당한 여유가 있고, 시설개선이 시급하지 아니한 데도, 2009. 3. 20.부터 2012. 6. 8.까지 사이에 운영비에서 676,000천 원 상당을 환경개선 준비금(2012년 2·3·4·5월, 4개월 동안 140,000천 원 적립)으로 지출하여 같은 기간 동안 지출된 운영충당적립금 376,000천 원과 통합하여 총 1,052,000천 원 상당이 법인명의로 정기적금(사회복지법인 ㉸㉸㉸ 명의)계좌에 사장(死藏)되어 있음.
- ㉸ ㉸시 ㉸ ㉸면 소재 ○○○○○○요양원(대표 ○○○)은 2013년도 입소노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고유기능인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사회재활비는 600천 원으로 절대 부족하게 반영하면서 환경개선준비금 예산은 12,000천 원으로 과다하게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9.24. 현재 실제 예산 반영액보다 9,900천 원이 많은 20,900천 원을 운영비에서 부당 지출

❖ 조치내용

- ○○○○○○요양원에서 법인명의로 정기적금 계좌에 장기 사장 중인 환경개선 준비금 676,000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여 입소노인의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8. ○○○○○○○○ 노인요양원 기본재산 미편입

❖ 관련법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위법·부당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 ㉸㉸군 ○○○○○○(대표자 겸 시설장 ○○○)은 2003. 4.16. 법인 설립허가 당시 ㉸㉸군 ㉸㉸면 ●●리 000-0번지(대지, 소유자 △△△)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증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9. 4. 현재까지 법인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같은 법인이 2007년 기능보강사업으로 1,552,000천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을 신축 준공하였는데도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등기를 2013. 9. 4.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조치내용

- ㉸㉸군에서는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군 ㉸㉸면 ●●리 000-0번지(토지)와 2007년 보조금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한 시설에 대해서도 법인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19. 노인복지시설 1년미만 근로 퇴직자 퇴직금 미반납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그 퇴직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요양원(원장 ○○○) 등 4개 시·군 11개 시설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 35명에 대하여 퇴직금 18,491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시설계좌로 반납하지 않음.

❖ 조치내용

- 1년 미만 근로자 명의로 부당하게 지급 및 적립된 퇴직금 18,491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위 11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20.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당지출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예산은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시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후원금으로 원장 휴대전화비, 개인 차량 유류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3개 시·군 5개 시설에서 35,883천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음.

❖ 조치내용

- ㉸㉸㉸㉸㉸ 등 3개 시·군 5개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35,883천 원은 회수 및 시설회계로 반납 조치(회수 663천 원, 반납 35,220천 원)하고, 위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21.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를 운영비로 무단전용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 ㉸㉸군 ㉸㉸㉸㉸학교(시설장 ㉸㉸)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생계비 목적 보조금 30,874천 원을 교부 받아 집행 하면서 43건 1,500천 원을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계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무단전용 사용하였음.

❖ 조치내용

- 보조금을 무단전용한 ㉸㉸㉸㉸학교(시설장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2. 노인복지시설 수당지급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별도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 ㉸군 ㉸㉸㉸㉸요양원(원장 ㉸㉸) 등 2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원장 ㉸㉸㉸ 등 시설 종사자 49명에게 별도의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2010. 1. 1.부터 2013. 9.26.까지 직책수당 8,680천 원, 직무수당 264,079천 원 등 총 272,759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 ㉸ ㉸시 ㉸㉸㉸㉸㉸㉸센터(센터장 ㉸㉸)에서는 재가지원 서비스 급여를 지급하면서 직무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이 센터장 ㉸㉸㉸에게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보조금으로 직무수당 700천 원을 부당지급하였음.
- ㉸ ㉸군 ㉸ ㉸면 ㉸㉸요양원에서는 장기 휴직자와 장기병가 자에게 종사자 수당 1,000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 ㉸군 ㉸㉸㉸㉸요양원(원장 ㉸㉸) 등 2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 앞으로 종사자에게 별도의 수당규정이 없이 직무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3. 사망자 및 거주불명 자에게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

❖ 관련법규

- 「기초노령연금법」 제8조, 제11조

❖ 위법·부당내용

-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 ㉸군 등 4개 시·군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인 ○○○ 등 20명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말소되어 수급권이 상실되었음에도 2012. 1. 1.부터 2013. 7.31.까지 기초노령연금 2,372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2,372천 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중지 대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촉구

24. 사회복지법인 ◎◎요양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위법·부당내용

-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으로 출연되는 재산은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 ㉸ ㉸군 사회복지법인 ◎◎(대표 ○○○)에서는 ㉸㉸㉸요양원 기능보강(증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 소유 토지(㉸ ㉸읍 ●●리 000-0번지 대 252㎡, 000번지 답 272㎡)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22억 5천만원) 해지없이 2012.12.11. 증여 받았으며 또한, 2012년 899백만원의 사업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 없이 기능보강(증축)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 774백만원으로 준공하였음에도(2013. 2월) 2013. 8.26. 현재까지 기본재산 변경 등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

- ㉸㉸㉸요양원에서 증여받은 재산과 기능보강 사업재산에 대하여는 기본재산 변경 등의 조치를 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표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26. 2013년 녹색자금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위법·부당내용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지원목적 및 지원사업 내용과 조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원 사업비를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ㄱ ㄱ시 사회복지법인 ㉹㉹㉹(대표 ㉹㉹)에서는 2012. 8. 6. 녹색사업단에서 꽃나라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신청내용과 같이 2013. 5. 9. 사회복지법인 시설내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ㄱ ㄱ시에 보조금을 교부 받았으나 법인시설 부지가 아닌 ㄱ ㄱ시 ㄱ ㄱ동 000-0번지 외1필지(1,542㎡) ㉹㉹㉹(대표 ㉹㉹의 부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사업을 부당하게 시행하였음.

❖ 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 ㉹㉹㉹(대표 ㉹㉹)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업계획부지에 대하여 법인재산 등록 절차를 이행토록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업무 철저 촉구

28. 노인요양원 등 위·수탁 협약조건 미이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위법·부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한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운영하는 자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 ㄱ ㄱ군에서는 학교법인 ㉠㉠㉠㉠과 ㄱ ㄱ군 ㉡㉡㉡요양원 및 ㉢㉢㉢요양원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4. 8.31.(3년간)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하면서 수탁 공모 시 제출한 2개 시설의 수탁기간 3년 동안 매년 10,000천 원씩 총 30,000천 원을 법인에서 수탁 시설에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수탁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수탁자는 2년이 지난 2013년 8월 현재까지 법인 전입금 20,000천 원을 세입 미 조치함.

❖ 조치내용

- 2012~2013년까지 재정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법인전입금 20,000천 원은 ㄱ ㄱ군 ㉠㉠㉠㉠과 ㄱ ㄱ군 ㉢㉢㉢요양원으로 각각 세입조치
- 사회복지 위탁 시설에 대하여는 「ㄱ ㄱ군 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에 적합하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9. ○○○○요양원 법인전출금 사용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로, 시설은 시설 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ㅉㅉ시 ○○○○요양원(시설장 ○○○)에서는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포함한 제반 운영비를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만 가능한데도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2013. 1. 8.부터 2013. 7. 4.까지 24,000천 원을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법인이 차용한 사채상환금으로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24,000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조치하고, ○○○○요양원(시설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0.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분할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

❖ 위법·부당내용

- 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물품구매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함에도,
- ㄷ ㄷ군 ㉔㉔㉔㉔㉔요양원(원장 ㉔㉔)에서는 2013년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2013. 3.29. 전동 침대 등 7종 42,353천 원을 종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한 견적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3인의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과 각각 100% 계약하므로 5,191천 원 상당의 예산 낭비 한 결과 초래

❖ 조치내용

- ㉔㉔㉔㉔㉔요양원(원장 ㉔㉔)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31.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노인복지 보건의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질의회신(2011. 9. 6)

❖ 위법·부당내용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단가는 설계 및 감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건축 공사 비용만을 포함한 것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필요한 설계용역 과 감리용역 비용은 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군 ㉸㉸㉸㉸㉸요양원(원장 ㉸㉸)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에서 2012. 5. 3.부터 2013. 3. 29.까지 건축·토목설계용역 비 24,750천 원, 건축·소방 감리용역비 9,900천 원 총 34,650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 기능보강사업의 설계용역비 등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 34,650천 원은 회수하고, ㉸㉸㉸㉸㉸요양원(원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2. 노인복지시설 ○○○○○ 종사자 인건비 과다 지급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따르면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 보수 지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군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에서는 종사자 △△△ 등 4명이 2012. 9.20. 퇴사 하였으면 보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4,246천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보수에 해당하는 5,870천 원을 지급하여 1,623천 원 부당지급

❖ 조치내용

- 과다 지급된 인건비 1,623천 원은 ○○○○○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3.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 보조금 집행 부적정

❖ 관련법규

- 「☐☐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군 ◎◎◎◎◎◎◎◎(노인요양시설) 원장 ○○○은 2012. 4.26.부터 2012. 7.12.까지 물리치료장비, 생활보조장비 등 총 117종의 장비구입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품목 및 수량 34개가 변경되었고, 가격이 60개 품목에서 변경되었음에도 보조사업의 내용과 금액의 배분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439천 원을 부당집행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촉구

34. ○○○○○ 기능보강사업 전기공사비 과다 지급

❖ 관련법규

- 「☐☐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

❖ 위법·부당내용

-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군 ○○○○○ 집(대표 ○○○)에서는 2010. 4. 7.부터 2011. 1. 20.까지 기능보강사업으로 옥외전력인입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선관 수량과 노무비를 총 2,722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완료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집행한 옥외전력인입 공사비 2,722천 원은 회수하고, 사회복지법인 ○○○○○ 집(대표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5. 사회복지시설 밀반찬 제공 서비스사업 집행 부적정

❖ 관련법규

- 「☞☞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1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 ◎◎◎◎◎복지관 등 5개 노인시설에서는 2012. 1. 1.부터 2013. 7.12.까지 밀반찬 제공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인 수급자 2,257명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주부식비를 지급받는 데도 밀반찬제공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39,344천 원 중복 지급

❖ 조치내용

- 서비스 대상자가 중복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대상자 선정 등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36. ○○○○○○요양원 시설운영비 부당사용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위법·부당내용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요양원(시설장 ○○○)은 2010. 1. 4.부터 2012.12.28.까지 250회에 걸쳐 시설소유 카니발(경남00고0000) 차량을 자택(ㄱㄱ) 출퇴근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운영비로 지출한 유류비 8,000천 원, 고속도로 통행료 1,201천 원 등 총 9,201천 원을 개인용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 ○○○○○○요양원 원장 △△△은 종사자들에게 매월 50천 원의 식대를 받아 식당운영비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1.11. 3.부터 2013. 2.26.까지 21회에 걸쳐 ㄱㄱ, ㄴㄴ, ㄹㄹ 등 외부 식당에서 체크카드로 2,175천 원 부당사용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지출된 운영비 11,376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위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37.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차입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단기차입금은 인건비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하고 일시운영 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은 제외)으로부터 차입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 □ □시 ◎◎◎◎(시설장 ○○○) 등 5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부터 188,323천 원을 부당하게 차입

❖ 조치내용

- 시설운영비를 부당하게 일시차입 하고, 이자와 원금상환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과목과 다르게 집행한 ◎◎◎◎(시설장 ○○○) 등 5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비 일시차입 및 이자와 원금상환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촉구

38. ◎◎요양원 장비보강사업 정산검사 소홀

❖ 관련법규

- 「☐☐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

❖ 위법·부당내용

- 사업비 정산액이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 ◎◎요양원에서는 2013. 3.20.부터 2013. 3.22.까지(3일간) 장비보강 사업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면서 냉매배관과 유선리모컨 설치용 전선 물량 총 3,073천 원 상당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치한 것으로 하여 비용을 과다 지급

❖ 조치내용

- 부당하게 집행한 에어컨설치 공사비 3,073천 원은 회수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촉구



39. ◎◎요양원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 부적정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위법·부당내용

-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준비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사유발생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함에도,
- ◎◎요양원에서는 2009. 9.24.부터 2013. 9.30.까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총 147,000천 원(월 3,000천 원)을 ●●VIP연금보험(36년 만기, ◎◎요양원 명의)으로 적립하였음.

❖ 조치내용

- ◎◎요양원의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은 원금손실 없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경하고, 원장 개인명의로 개인연금 보험으로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요양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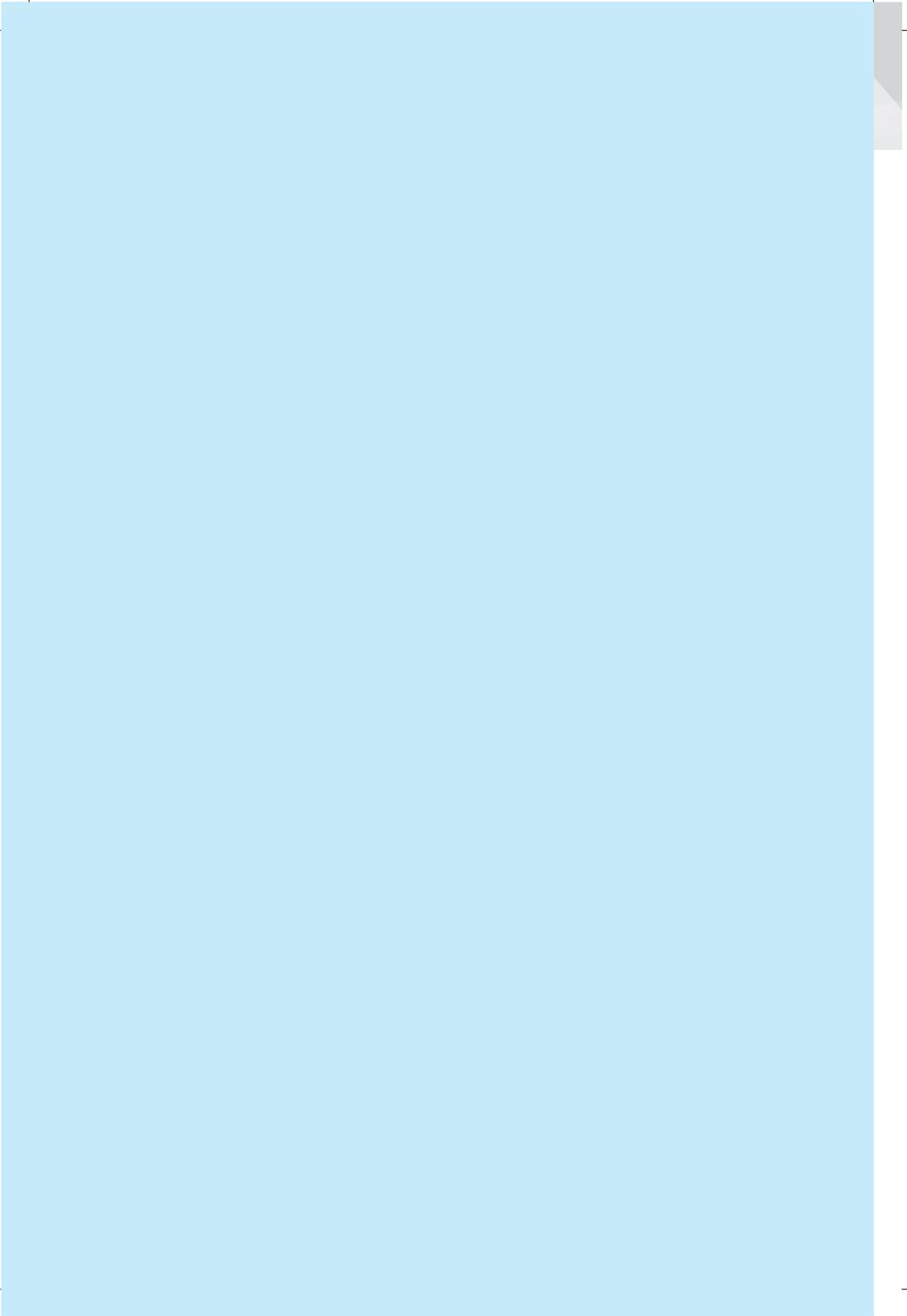
GYEONGNAM

V

노동·보훈·주택 분야

2013년
사회복지분야 감사 사례집





V 노동·보훈·주택 분야

1. 사회적기업(주)○○○○ 보조금 부당사용

❖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시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주)○○○○(대표 ○○○)에서는 2013년 7월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지원된 4,416천 원의 보조금을 법인 또는 지인 △△△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850천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적 사용하였음.

❖ 조치내용

-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 ○○○○사업 승인 없이 보조금 단체 부당지급

❖ 관련법규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및 제19조

❖ 위법·부당내용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사)○○ ○○○○○(회장 ○○○)에서는 「2012년 ●●●●사업」보조금 28,000천 원을 교부 받은 후 도지사 승인 없이 성지순례 행사비 항목을 신설하여 「□□□□□□□□단체», 「▨▨▨▨▨▨단체」등 2개 단체에 보조금으로 희생자와 유족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각 3,000천 원 씩 총 6,000천 원을 지급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집행 하였음.

❖ 조치내용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4. 한옥지원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

❖ 관련법규

-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 위법·부당내용

-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고,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 ◎◎부서에서는 2011년~2012년 한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6개소의 사업이 1년 이상 경과하였는데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완료시키지 않고 있음에도 2013. 8.20.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 및 도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제 부산 등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60,000천 원(도 30,000, 시군 30,000)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

❖ 조치내용

- 규정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업무 철저 촉구



2013년

사회복지분야 감사 사례집

2013년 11월 인쇄

2013년 11월 발행

발행 : 경상남도

편집 : 감사관 **이선두**

감사담당 **정용조**

회계감사담당 **김종화**

기술감사담당 **박환기**

일상감사담당 **이준선**

조사담당 **서정두**
